

방통융합미래전략체계연구 지정2013-62

유료방송의 아날로그 방송서비스 종료 지원방안 마련

A Study on Digital Switchover Policy of Pay TV

2013. 11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방통융합미래 지정2013-62
전략체계연구

유료방송의 아날로그 방송서비스 종료 지원방안 마련

(A Study on Digital Switchover Policy of Pay TV)

정용찬/정경오/김윤희

2013. 11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이 보고서는 2013년도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발전기금 방통융합 미래전략체계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미래창조과학부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유료방송의 아날로그 방송서비스 종료지원 방안 마련』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년 11월

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총괄책임자: 정용찬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정경오 부연구위원

김윤화 부연구위원

목 차

요약문	vii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 방법	2
제 2 장 국내·외 서비스 종료 사례 분석	3
제 1 절 국내·외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동향 분석	3
1. 국내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시장 현황	3
2. 해외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동향	4
제 2 절 국내 기간통신산업 폐지 및 방송서비스 종료 사례 분석	6
1. 기간통신사업 폐지 사례 분석	6
2. 방송서비스 종료 사례 분석	8
3. 인터넷서비스 중단 사례 분석	9
제 3 절 해외 서비스 종료 사례 분석	11
1. 케이블방송서비스 종료 사례 분석	11
2. 주요국 사례 시사점	27
제 3 장 방송서비스 종료 승인과 가입자 보호 방안	29
제 1 절 방송서비스 종료 관련 쟁점과 이슈 분석	29
1. 쟁점	29
2. 아날로그 유료방송서비스 종료를 승인 또는 신고에 관하여	30
3. 아날로그 유료방송서비스의 종료 승인과 변경허가에 관하여	34
4. 아날로그 유료방송서비스의 종료 시 최소 유지 기간에 관하여	37
제 2 절 아날로그 유료방송서비스 종료에 대한 현행 방송법령의 적용 여부	39

1. 변경허가 제도를 통한 아날로그 유료방송서비스 종료 승인의 대체 여부	39
2. 약관승인 제도를 통한 아날로그 유료방송서비스 종료 승인의 대체 여부	40
3. 행정지도를 통한 가입자 보호 및 아날로그 유료방송서비스 종료 승인의 대체 여부	42
제3절 방송서비스 종료 승인 기준	43
제4절 방송서비스 종료시 가입자 보호 방안	45
1. 가입자 보호의 필요성	45
2. 가입자 보호 대상과 방안	46
제4장 방송서비스 종료 법제화 방안	50
제1절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법안의 필요성	50
1. 개요	50
2.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	51
3. 단행법안 제정의 필요성	52
제2절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법안의 주요 내용	53
1. 아날로그 유료방송 등의 종료 승인	53
2.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필요한 조치	54
3. 저소득층에 대한 디지털 전환의 지원 근거 마련	55
4. 아날로그 유료방송 가입자 등의 시청권 보호	58
제5장 결 론	61
참고문헌	63
[부록]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66
[별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7조 관련)	80

표 목 차

〈표 2-1〉 연도별 케이블TV 가입자 현황	4
〈표 2-2〉 지역별 케이블TV 가입자 현황(2013년 6월 기준)	4
〈표 2-3〉 주요국의 방송 플랫폼별 가구 비중(2011년)	5
〈표 2-4〉 주요국의 아날로그케이블TV 가입가구 추이	5
〈표 2-5〉 국내 종료 서비스의 가입자 보상방안	10
〈표 2-6〉 TWC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역 및 일정	13
〈표 2-7〉 TWC에서 제공하는 케이블TV 상품	14
〈표 2-8〉 콕스 커뮤니케이션의 상품 내용	15
〈표 2-9〉 미디어컴의 디지털전환 채널 및 적용지역	16
〈표 2-10〉 주요국의 아날로그케이블 디지털 전환 규제 유형별 특징	27
〈표 2-11〉 주요국의 아날로그케이블 디지털 전환 시 조치 사항	28
〈표 3-1〉 사전규제와 사후규제의 구별기준	35
〈표 3-2〉 아날로그방송 서비스 종료 승인 절차(2G 종료 사례 준용)	43
〈표 3-3〉 아날로그방송 서비스 종료 승인 시 검토 사항	44
〈표 3-4〉 대체 서비스 유형별 가입자 선택 가능성	46
〈표 3-5〉 가입자 보호 대상 유형	46
〈표 3-6〉 티브로드 광진성동방송 사회복지요금감면 대상	48
〈표 3-7〉 제주방송 사회복지요금감면 대상(아날로그 의무형은 제외)	48
〈표 3-8〉 가입자 보호 대상 유형별 지원 방법	49
〈표 4-1〉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율(2013년 3월 기준)	51

그림 목 차

[그림 2-1]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율	3
[그림 2-2] 주요국의 유료방송가입가구 및 유료방송 디지털가입가구 비중(2011년)	6
[그림 2-3] 독일 케이블과 위성방송의 디지털화	17
[그림 2-4] 전송방식 별 텔레비전 방송 수신 현황	18
[그림 2-5] 전송방식 별 디지털방송 가구 현황	19

요 약 문

1. 제 목

유료방송의 아날로그 방송서비스 종료지원방안 마련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고화질, 다채널 방송 및 양방향 서비스 제공으로 시청자 복지 향상, 유료방송(케이블/위성) 네트워크 효율화를 통한 신규 서비스 도입 기반 마련,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경영환경 개선 및 시장진입 기회 확대 등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디지털방송의 혜택이 전 국민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대안 제시를 목표로 한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제2장에서는 국내 방송통신서비스 종료 사례분석과 해외 주요국의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현황 및 추이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3장에서는 방송서비스 종료와 관련된 쟁점과 이슈를 식별하고 아날로그 유료방송서비스 종료에 대한 현행 방송법령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다 또한 방송서비스 종료 승인 기준과 방송서비스 종료시 가입자 보호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유료방송 아날로그 종료와 관련된 절차 법제화 방안의 필요성과 법률(안)과 시행령(안)을 제시했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해외 주요국의 아날로그케이블의 디지털 전환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상파의 아날로그 방송 종료 이후 아날로그 상품 가입자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 유지 기간이 필요하다. 둘째, 디지털 전환 시에도 추가 요금 부담 없이(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어댑터나 셋톱박스를 지원해 아날로그 가입자 부담을 최소화하여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

아날로그 유료방송서비스 종료를 위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방송법」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 「방송법」이나 시행령을 통해 아날로그 유료방송서비스의 종료에 대한 규제 및 시청권 보호를 위한 가입자 보호 방안을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결과 변경허가 제도나 약관승인 제도를 통해서도 종료승인을 대체하기 어렵고, 행정지도의 경우 가능한 하지만 충분히 효과적인 수단이라 하기 어려우므로 디지털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단행 법률의 제정 내지 「방송법」 개정을 통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법안에는 아날로그 유료방송 등의 종료 승인,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필요한 조치, 저소득층에 대한 디지털 전환의 지원 근거 마련, 아날로그 유료방송 가입자 등의 시청권 보호 관련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유료방송사업자의 아날로그방송 서비스 종료 승인시, 서비스 이용자수, 대체 서비스 유무 등 환경적인 요인과, 사업자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준비상태, 가입자 보호 조치 노력, 기술발전 추세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유료방송의 아날로그방송 서비스 종료시 취약계층과 일반가입자 등 가입자 유형에 맞추어 클리어콕이나 요금감면, 무료 셋톱박스 대여 등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본 과제에서 제시한 방송서비스 종료 승인 기준과 방송 서비스 종료 시 가입자 보호 조치 방안, 유료방송 디지털전환법안과 시행령(안)은 유료방송의 아날로그 방송서비스 종료된 정책 수립에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6. 기대효과

본 과제는 아날로그 서비스 종료와 관련된 정책 수립 시 필요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고 국내외 주요 유사 사례분석을 통해 유료방송 아날로그 서비스 종료 시 발생될 예상되는 문제를 최소화함으로써 규제 기관의 신뢰를 증진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가입자 피해 최소화를 통한 시청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SUMMARY

1. Title

A Study on Digital Switchover Policy of Pay TV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The need of Digital Switchover of Pay TV is increasing due to users' welfare, network efficiency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support government policies to promote digital switchover of Pay TV and to protect of pay TV subscribers.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In chapter 2, we review the trends of digital switchover in Korea's pay-TV market. And we also examine the status of Digital Switchover of foreign countries. And we analyze Korean cases of service ending in the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industry. We also analyze foreign cases of digital switchover in cable TV market in chapter 2. In chapter 3, we suggest the approval of digital switchover and the protection of cable TV subscribers. In chapter 4, we propose draft act of digital switchover of Pay TV.

4. Research Results

The implications of case studies for foreign countries are as followings. It is needed to

maintain the analogue servic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fter terrestrial analogue switch-off. And it also needed plan for support analogue service subscribers through providing the adapter or set-top-box at a low price.

To carry out the effective administrative action for approval of digital switchover and the protection of cable TV subscribers, it is desired that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for digital switchover or reformation the broadcasting act is preferable to the current broadcasting act.

The special act for digital switchover would be required to be specify clearly the standard process of approval of digital switchover, plan for support of low-income group, and the protection for access right of analogue cable TV subscribers.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This study will provide supporting documentation and reference for policy making of digital switchover of pay TV. Especially, this study will bring practical help to formulate policy for approval criteria of digital switchover and the protection of cable TV subscribers, and to prepare a bill of digital switchover of Pay TV.

6. Expectations

This study will lay out a logical basis for policy making related to digital switchover of pay TV. And the result of this study enhances the confidence of regulatory authority to minimize expected problems and will protect pay TV subscribers in terms of minimization of loss in the process of digital switchover.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Korean and Foreign Cases

Chapter 3. Policy Measures for Approval of Digital Switchover
and Protection of Subscribers

Chapter 4. Draft Act of Digital Switchover of Pay TV

제1 장 서 론

제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아날로그 가입자를 디지털 가입자로 전환하고 차세대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도입 기반 조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¹⁾ 1997년 시작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2012년 말 아날로그방송 종료로 완료되었다.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고화질, 다채널 방송 및 양방향 서비스 제공으로 시청자 복지를 향상시키고, 유료방송(케이블/위성) 네트워크 효율화를 통한 신규 서비스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방송 채널사용사업자(PP)의 경영환경 개선 및 시장진입 기회를 확대하는 등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²⁾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기존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를 의미한다.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사업자간 경쟁에 의해 자율적,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기존 가입자의 피해가 예상되며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는 가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보호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디지털방송의 혜택이 전 국민으로 확산되고 아날로그 방송 종료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대안 제시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방송서비스 종료 승인 기준과 종료시 가입자 보호 조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유료방송 아날로그 종료 승인과 가입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법령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2012), 1쪽.

2) 방송통신위원회(2012), 2쪽.

제 2 절 연구 방법

국내·외 방송통신서비스 종료 사례의 경우 사례 분석(Case Study)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국내 사례는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2G 서비스(PCS 사업) 종료 사례 분석을 통해 서비스 종료 승인 시 상황과 종료 승인 방식, 승인 시 고려 사항 등 규제기관의 대응 방식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위성DMB 서비스 종료 사례와 인터넷 사업자(KTH, 야후, 프리첼 서비스)의 서비스 중단 사례 분석을 통해 기존 사례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본 연구에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분석을 위해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인도의 케이블방송 디지털 전환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이슈를 도출한다.

방송서비스 종료 시 승인 기준과 가입자 보호 조치 방안 연구를 위해서는 기존 유사 서비스 종료 시 승인 기준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유료방송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디지털 유료방송을 이용하기 위한 전환비용 부담으로 아날로그 유료방송 가입자의 자발적 디지털 전환이 어려운 상황이다. 아날로그 케이블방송에 비해 디지털 케이블방송은 상당한 가격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경우 디지털TV 구매 비용, 셋톱박스 이용 요금 부담 등을 고려하면 자발적인 디지털 전환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입자 보호 조치 실효성을 배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송서비스 종료 절차 법제화 방안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진에서 마련한 초안을 기초로 법률 전문가, 방송학자 등 관련 전문가와 케이블방송협회 등 이해 당사자로 구성된 연구협력회의를 통해서 방송서비스 종료 절차 법제화 방안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정책당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최종 방안을 도출한다. 법제화 방안은 현행 법령으로 가능한지를 우선 검토하고, 별도 법령 제정이 필요할 경우 법률안과 시행령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법제화 방안은 유료방송의 아날로그 방송서비스 종료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수용자 복지 관점에서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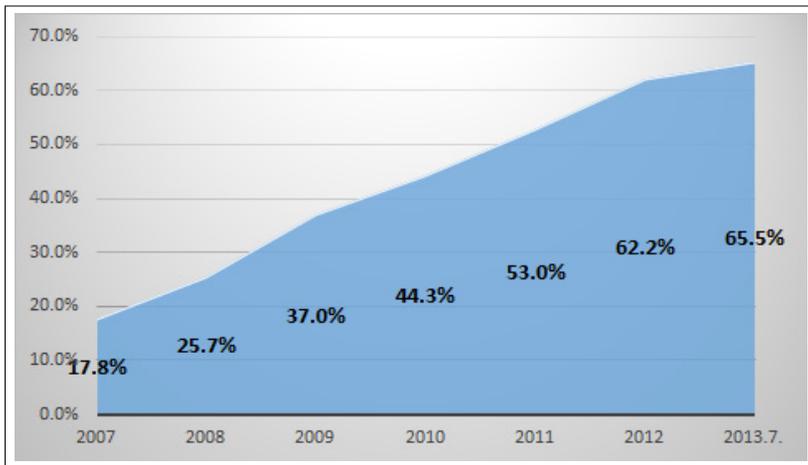
제2장 국내·외 서비스 종료 사례 분석

제1절 국내·외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동향 분석

1. 국내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시장 현황

국내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2009년 IPTV가 도입된 이후 사업자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2012년 6월 기준 국내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율은 54.8%로 2007년 17.8%에서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림 2-1]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율



주: 케이블TV방송, IPTV, 위성방송의 모든 가입자수 기준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유료방송 유형별 디지털 전환율을 살펴보면, IPTV와 위성방송 가입자 중에는 아날로그 가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케이블TV방송 가입자의 경우 디지털 서비스 상용화 9년째인 2013년 6월 기준 디지털 전환율은 38.2%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 연도별 케이블TV 가입자 현황

(단위: 단자 수)

항 목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6
아날로그	13,908,616	13,282,667	12,624,541	11,651,080	10,707,076	9,708,790	9,234,168
디지털	855,571	1,914,118	2,670,062	3,425,505	4,225,594	5,196,227	5,712,992
합 계	14,764,187	15,196,785	15,294,603	15,076,585	14,932,670	14,905,017	14,947,160
전환율	5.8%	12.6%	17.5%	22.7%	28.3%	34.9%	38.2%

자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2013).

케이블TV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3년 6월 기준 서울은 61.2%, 경기도는 41.3%, 광역시는 30.5%,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은 29.2%로 대도시와 중소도시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2〉 지역별 케이블TV 가입자 현황(2013년 6월 기준)

지 역 (SO 수)	케이블TV 가입자 수			
	합계	디지털	아날로그	전환율(%)
서울	2,974,001	1,821,046	1,152,955	61.2%
경기	2,845,830	1,174,060	1,671,770	41.3%
광역시	4,244,041	1,294,262	2,949,779	30.5%
중소도시·농어촌	4,883,288	1,423,624	3,459,664	29.2%
합 계	14,947,160	5,712,992	9,234,168	38.2%

자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2013).

2. 해외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동향

우리나라처럼 아날로그 TV 가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는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이다.³⁾ 앞서 열거한 국가 중에서 일본의 지상파 아날로그 TV 가구가 0.9%, 독일의 아날로그 위성방송가구가 2%인 것을 제외하고는 지상파, 위성, IPTV는 모두 디지털 전환이 100% 이루어져 있다. 아날로그 케이블TV의 경우는 미국이 9.7%, 독일이 32.5%, 네

3) 임 준 외(2012).

덜란드가 25.3%, 일본이 48.8%로 나타난다.

〈표 2-3〉 주요국의 방송 플랫폼별 가구 비중(2011년)

(단위: %)

구분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지상파TV	아날로그	0.0	0.0	0.0	0.9
	디지털	19.0	13.2	6.8	14.3
위성TV	아날로그	0.0	2.0	0.0	0.0
	디지털	27.3	32.7	11.3	22.6
케이블TV	아날로그	9.7	32.5	25.3	48.8
	디지털	37.1	15.5	44.1	8.0
IPTV	디지털	6.9	4.2	12.5	5.5

자료: Informa Telecoms & media(2012a, 2012b, 2013)

주요국의 아날로그케이블TV 가입가구 추이를 살펴보면, 미국은 2007년 2,778만 가구에서 2011년 1,201만 가구로 감소하여 연평균 394만 가구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졌다. 독일은 2007년 1,735만 가구에서 2011년 1,257만 가구로 연평균 120만 가구가 디지털로 전환하였다. 네덜란드는 연평균 2007년 424만 가구에서 2011년 189만 가구로 연평균 59만여 가구가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2007년 2,019만 가구에서 2011년 2,312만 가구로 지난 4년간 29만여 가구가 오히려 디지털에서 아날로그케이블TV로 전환 혹은 신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2-4〉 주요국의 아날로그케이블TV 가입가구 추이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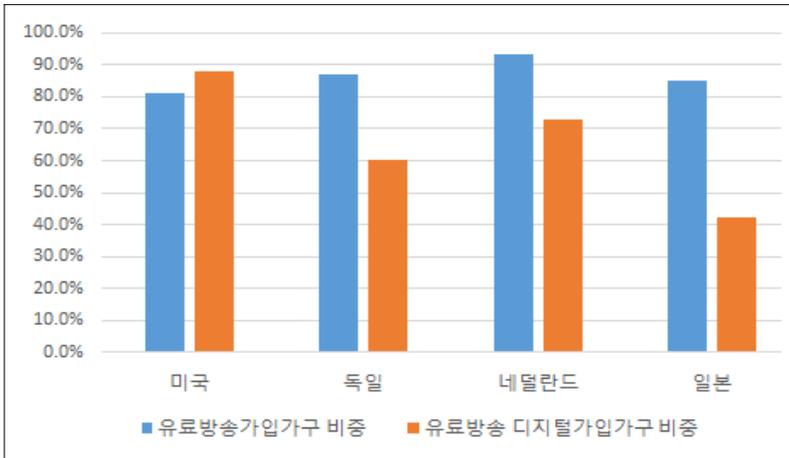
	2007	2008	2009	2010	2011
미국	27,787	23,285	19,508	15,107	12,013
독일	17,354	16,126	14,718	13,695	12,568
네덜란드	4,244	3,683	3,003	2,448	1,888
일본	20,192	20,588	21,796	22,569	23,117

자료: Informa Telecoms & media(2012a, 2012b, 2013)

유료방송 가입가구와 유료방송의 디지털가입가구 비중을 보면, 미국의 경우 유료방송

가입가구 및 유료방송의 디지털가입가구 비중이 각각 81%, 88%로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유료방송 디지털가입가구의 비중이 오히려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반면, 네덜란드, 독일, 일본의 경우 유료방송 가입가구 비중은 80%가 넘어 높게 나타났으나, 유료방송 디지털가입가구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2-2] 주요국의 유료방송가입가구 및 유료방송 디지털가입가구 비중(2011년)



자료: Informa Telecoms & media(2012a, 2012b, 2013)

제 2 절 국내 기간통신산업 폐지 및 방송서비스 종료 사례 분석

1. 기간통신사업 폐지 사례 분석

가. KT의 2G 서비스(PCS 사업) 종료 사례 개관

대표적인 기간통신사업 폐지 사례로는 KT의 2G 서비스(PCS 사업) 종료를 꼽을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⁴⁾에 근거하여 KT의 2G 서비스 사업은 2012년 1월 13일 서울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서비스가 종료된 바 있다. 서비스 종료 승인시 KT의 2G 서비스 이용자

4)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을 경우 폐지를 승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가입전환 대행 및 비용부담 등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수는 약 15만 9천명으로 전체 KT 이동통신 이용자 수의 1% 미만이었다.

2011년 4월 KT의 2G 서비스 1차 폐지 승인 신청시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2G 서비스 이용자 수가 81만 명으로 많고 서비스 종료 통지기간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승인을 유보하였다.⁵⁾ 이후 3개월 뒤인 2011년 7월 KT가 2G 서비스 폐지 승인 재신청을 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 예정일을 제외한 KT 계획을 수정 접수하였다.

나. 규제기관의 개입 현황

서비스 종료를 위한 서비스 종료 승인은 폐지계획을 먼저 접수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폐지 승인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접수 시점으로부터 2개월 후인 2011년 11월 KT가 폐지 승인 요청을 하여 2011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폐지 승인을 받았다. 이때 KT의 2G 서비스 이용자는 15만 9천명(2011년 11월 21일 기준)으로 전체 KT 이동통신 이용자수의 0.96% 수준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 승인 결정 시 남은 이용자 수와 특성, KT의 가입전환 노력, 국내·외 사례, 대체서비스 유무, 기술발전 추세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 승인 조건으로는 첫째, 방통위 승인 14일이 경과한 이후 PCS사업 폐지를 진행하고, 방통위 승인 즉시 이용자에게 우편 안내 등으로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둘째, 사업폐지 절차 진행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며, 셋째, PCS사업 폐지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사실과 이용자 보호조치 이행실적을 방통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다. 가입자 보상정책

KT는 기존의 2G 가입자가 3G 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이용자 보상계획을 마련했다. 첫째, 기존 2G 가입자가 자사의 3G로 전환하는 경우 2년간 매월 6,600원의 통신요금 할인을 제공하고, 가입비 및 USIM 카드 비용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둘째, KT의 3G 서비스로 전환 시 기존에 사용하던 2G 단말기의 할부금과 약정기간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해 주고, 각종 부가서비스와 멤버십도 그대로 승계하도록 했다. 셋째, 2년 약정으로 KT의 3G로 전환시 지정된 피쳐폰이나 스마트폰을 무료로 제공하고, 아이폰, 갤럭시폰 등 최신

5) 경제투데이(2011. 6. 24).

스마트폰 단말기의 경우에는 일정요금제 선택 시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KT의 2G 서비스 가입자가 2G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타사로 번호 이동하는 경우, 가입비 3만원에 교통비 1만원을 더한 4만원을 환불해주고, 기존 단말기는 3만 3천원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타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위약금 및 할부금을 면제해주고 단말기를 보상해 주기로 하였다.⁶⁾

2. 방송서비스 종료 사례 분석

가. SK텔링크의 위성DMB 사업 종료 사례 개관

SK텔링크는 2005년 5월 상용서비스를 시작한 위성DMB 서비스를 7년여 만에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성 DMB는 우리나라에서 상용화 시작 당시 세계 최초의 서비스 상용화였으며 2009년 2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 활성화되다가 2012년 7월 가입자가 39,000명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사업 종료를 하게 되었다.⁷⁾

위성DMB 사업 종료의 주된 원인으로는 지상파DMB 5천만대 보급, 스마트폰 대중화, N스크린 서비스 확대 등이 거론되었다. 위성DMB 서비스는 일반요금 6,000원, 복지요금 4,200원으로 제공되어 왔는데, 중계기, 위성사용료 등으로 매월 수십억 원 대의 운영비가 발생하는 반면, 매체경쟁력 상실로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수익모델을 발굴하지 못했다.

나. 규제기관의 개입 현황

SK텔링크는 위성DMB 사업을 2012년 8월 31일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2012년 7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업상 어려움을 이유로 위성DMB 사업 종료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7월 5일 제37차 전체회의에서 SK텔링크의 위성 DMB 사업 종료계획을 보고 받고 종료계획서에 따라 사업종료를 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⁸⁾

다. 가입자 보상정책

SK텔링크는 사업을 종료한 이후 6개월여 기간 동안 이용약관 및 소비자보호지침 등을

6) 디지털타임즈(2011. 11. 23), 디지에코(2011).

7) IT동아(2012. 7. 5).

8) 디지에코(2012).

기준으로 가입자 보호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고객 보상 기준은 전체 가입자에게 이용 요금 3개월 면제 및 가입 회선당 시청권 제약 보상금 1만원을 지급하였다. 위약금 발생 가입자에게는 약정 위약금 전액을 면제해주고, 가입비를 납부한 가입자에게는 가입비 2만원 전액을 환불 조치했다. 또한 선납 요금 납부 가입자에게는 선납 잔여기간 요금을 월할 계산하여 환불 조치했다.

3. 인터넷서비스 중단 사례 분석

가. KTH의 파란 서비스 종료

KTH는 2004년 한미라와 하이텔을 통합하여 출범한 포털 서비스 파란 서비스를 2012년 7월 31일 종료하였다. 네이버, 다음과 같은 대형 포털 서비스에 밀려 페이지뷰 점유율이 1%에 그쳤고, 파란 서비스가 KTH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수준에 그치면서 결국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게 되었다.⁹⁾

KTH는 파란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메일과 블로그를 다음 커뮤니케이션즈로 이전하여 파란 서비스 종료 후에도 다음 메일과 다음 티스토리를 통해 파란메일 주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용자들이 파란 메일, 쪽지, 블로그, 클럽 등에서 만든 데이터 전체를 2012년 10월 4일까지 2개월여의 기간을 주고 데이터 보관 및 백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나. 야후(Yahoo) 서비스 종료

야후코리아는 2012년 12월 31일 한국 계정의 야후 포털 서비스를 종료하였다. 국내 토종 포털서비스인 네이버, 다음에 밀려 국내 포털 서비스 점유율이 1% 이하로 떨어진 것이 주원인으로 꼽힌다.¹⁰⁾

야후코리아는 서비스 종료 시 이용자들에게 두 가지 옵션을 제시했다. 하나는 미국 야후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미국계정의 야후 서비스로 전환하여 메일, 주소록, 일정관리, 메모장, 사진공유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른 하나는 미국 야후 계정으로

9) 한국경제TV(2012. 6. 20).

10) 이투데이(2012. 12. 31).

전환하고 싶지 않은 경우 1개월의 기간을 두고 개인이 생성한 데이터를 백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미국계정으로 전환하지 않은 이용자의 경우 모든 자료를 백업하기에 1개월이 매우 짧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다. 프리첼, 나우누리 서비스 종료

프리첼 서비스는 2013년 2월 18일 서비스를 종료하였다. 프리첼은 2000년 서비스를 시작하여 2001년 200만 가입자를 모으기도 했으나 2002년 말 시행한 유료화 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2011년 3월 파산선고를 받게 되었다. 프리첼은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서비스 종료 30일 전에 종료를 공지하고 1개월의 기간을 두고 이용자들이 데이터를 백업하도록 공지했다.

2013년 1월 31일 서비스 종료를 선언한 나우누리 서비스의 경우 2개월 동안 개인 데이터를 백업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나우누리 이용자들은 '나우누리 살리기' 카페를 네이버에 개설하고 나우누리 서비스를 인수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또한 나우누리의 개인 이용자는 나우SNT를 상대로 법원에 서비스 이용종료 금지 처분 신청을 내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¹¹⁾

〈표 2-5〉 국내 종료 서비스의 가입자 보상방안

종료 서비스명	가입자 보상방안
KT의 2G 서비스 (2012. 1. 13부터 순차적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2G 가입자의 3G 전환가입시 2년간 매월 6,600원 요금 할인, USIM카드 비용 면제, 가입비 면제 - 3G 2년 약정 전환가입시 피쳐폰 및 스마트폰 무료 제고, 일정요금제 이상 선택시 최신 스마트폰 단말기 무료 제공 - 타사의 2G 서비스로 번호이동하는 경우 가입비 3만원에 1만원을 더한 4만원 환불, 기존 단말기 33,000원 보상, 위약금 및 할부금 면제
SK텔레콤 위성DMB (2012. 8. 31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가입자에게 이용 요금 3개월 면제 및 가입희선당 시청권 제약 보상금 1만원 지급 - 위약금 발생 가입자에게 약정 위약금 전액 면제 - 가입비 납부 가입자에게 가입비 2만원 전액 환불 - 선납 요금 납부 가입자에게 선납 잔여 기간 요금을 월할 계산하여 환불

11) 서울신문(2013. 2. 12).

종료 서비스명	가입자 보상방안
KTH 파란(paran) (2012. 7. 31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일과 블로그를 다음 커뮤니케이션즈로 이관하여 파란 서비스 종료 후에도 다음 메일과 다음 티스토리를 통해 파란메일 주소로 이용가능토록 조치 - 이용자의 데이터 백업 기간 2개월 부여하고, 이후에도 데이터 보관 및 백업
야후코리아 야후(Yahoo) (2012. 12. 31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야후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미국계정의 야후 서비스로 전환하여 메일, 주소록, 일정관리, 메모장, 사진공유 서비스 등 이용가능토록 조치 - 미국 야후 계정으로 전환하고 싶지 않은 경우 1개월의 콘텐츠 백업기간 부여
프리첼 (2013. 2. 18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종료 30일 전에 종료 공지 - 1개월의 이용자 데이터 백업 기간 부여
나우누리 (2013. 1. 31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월의 이용자 데이터 백업 기간 부여 - 나우누리 이용자의 '나우누리 살리기' 카페 개설 및 나우SNT에 대한 서비스 이용종료 금지 가치분 신청 법원에 제출

제 3 절 해외 서비스 종료 사례 분석

1. 케이블방송서비스 종료 사례 분석

가. 미국

1) 디지털 전환 현황

2009년 6월 12일 지상파방송의 아날로그 종료를 완료한 미국의 경우 지상파 방송과 달리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케이블 사업자에게 전환과 관련한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고 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FCC)의 소비자 지침(Consumer Guideline: DTV Transition Did Not Require Cable Systems to Switch to Digital)에 의하면 세부적인 디지털 전환 방식에 대해서도 지역 케이블 사업자의 재량사항임을 밝히고 있다.¹²⁾

12) There is no government requirement for the way cable companies transmit their signals.....There is no government requirement for the way cable companies transmit

최근 변경된 사항은, 케이블사업자는 하이브리드케이블시스템(hybrid cable system,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 모두의 형태로 수신하고 있는 경우) 가입자에게 디지털 수신을 위한 추가 기기(셋톱박스, 디지털전환 어댑터DTA, 또는 케이블 카드)에 대해 무료 혹은 낮은 적정가격으로 대여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케이블사업자는 디지털방송 전환 완료 최소 30일 전에 가입자와 지역방송사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지상파방송 디지털 전환 후에도 케이블 가입자들의 지상파방송 시청권 보장을 위한 FCC 규칙(viewability rule)을 제정하여 지상파 아날로그방송 종료('09.6.12) 후 3년 동안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아날로그로 변환하여 재송신하도록 제도화했다. 이 규칙은 제정 당시 2012년 6월 11일까지 유효한 일몰제를 적용했는데 FCC는 2012년 6월 11일 만장일치로 이 규칙을 6개월 후에 종료할 것을 의결했다. 따라서 이 규칙은 2012년 12월까지 연장되었는데 지역 중소방송사들은 최소한 1년에서 1년 반 연장되기를 기대했다.¹³⁾

2) 디지털 전환 사례

① 컴캐스트(Comcast)

컴캐스트는 미국 최대 케이블TV방송 사업자로서 2013년 6월 기준으로 케이블 가입자수는 약 2,170만명이며,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는 약 1,990만명 정도이다. 2012년 총 매출액은 약 626억 달러이다.

컴캐스트는 케이블TV가입자에게 개별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관한 안내 메일을 통해 통보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2009년부터 진행되어온 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자체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진행해 옴으로써 2013년 초 대부분의 시스템(채널)에 대해서 100% 디지털 전환을 완료했다.

컴캐스트는 한정 베이직(Limited Basic)과 확장 베이직(Expanded Basic) 두 가지 형태의 상품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을 시행하고 있다. 한정 베이직 상품의 경우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가구당 3개의 디지털어댑터로 방송시청이 가능하다. 별도로 추가할 경우 각각의 디지털 어댑터당 월 0.55달러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그 이외 상품 가입자의 경우 개별 디지털 어댑터마다 월1.99달러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디지털

their signals(<http://www.fcc.gov/guides/>).

13) TVNewsCheck(2012. 6. 12), "FCC To Kill Viewability Rule On Dec. 12".

전환 어댑터 설치방법은 홈페이지와 개인 메일을 통해 고지하고 있다.

② 타임워너케이블(Time Warner Cable)

타임워너케이블(Time Warner Cable이하 TWC)은 미국 내 약 1천 2백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 매출액 214억 달러를 기록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케이블방송사업자다.

TWC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2013년 봄부터 뉴욕시 전 지역에서 자사 기본 TV채널에 대해 모두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년까지 케이블 셋톱박스나 케이블카드로 연결되지 않는 모든 가입자에 대해 무료로 디지털 어댑터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단, 2015년 1월부터 각 어댑터는 월 99센트의 비용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전환 이후 기존의 채널번호에 대한 변경은 없을 예정이다.

<표 2-6> TWC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역 및 일정

날짜	구역	날짜	구역
2013. 6. 18	마운트 버넌	2013. 10. 8	브룩클린: 구역 L
2013. 6. 25	버젠 카운티	2013. 10. 9	브룩클린: 구역S
2013. 6. 25	스테이튼 아일랜드	2013. 10. 10	퀸즈: 구역K
2013. 6. 31	맨하탄: 구역A	2013. 10. 15	브룩클린: 구역 M 퀸즈: 구역O 북 맨하탄: 구역 G
2013. 8. 7	맨하탄: 구역B		
2013. 8. 13	맨하탄: 구역C		
2013. 8. 20	남 맨하탄: 구역D	2013. 10. 17	퀸즈: 구역 Q
2013. 8. 27	북 맨하탄: 구역E	2013. 10. 22	브룩클린: 구역W
2013. 9. 24	브룩클린: 구역R	2013. 10. 24	퀸즈: 구역J, U
2013. 10. 3	북 맨하탄: 구역F		

자료: 타임워너케이블 홈페이지 http://www.timewarnercable.com/content/dam/residential/pdfs/support/tv/DCI/dci_nyc_schedule.pdf

〈표 2-7〉 TWC에서 제공하는 케이블TV 상품

상품	가격	채널	비고
베이직TV	월 19.99달러	무료 로컬HD채널(로컬뉴스와 날씨채널)을 포함해 인기 있는 20개 네트워크 및 로컬 채널 제공	온라인 신청가능
표준TV	지역마다 다름*	베이직TV상품의 채널을 포함한 총70개 채널 제공	온라인 신청불가
디지털TV	월 49.99달러	40개 음악채널 선택가능 6개월간 무료 DVR 제공 총200여개 채널 제공	온라인 신청가능
DTV에스파놀	월 49.99달러	디지털TV상품과 동일 에스파냐채널 추가	온라인 신청가능

주: TWC홈페이지에서는 표준TV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가격을 적시하지 않고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다고 되어있음. 이는 각 개별 지역에 따라 가격과 채널 수가 유동적임을 보여주는 것임. 그러나 베이직TV와 디지털TV의 가격으로 보건대, 약 30~40달러 정도일 것으로 보임.

③ 콕스 커뮤니케이션(Cox Communication)

콕스 커뮤니케이션(혹은, 콕스 케이블)은 미국에서 세 번째 큰 케이블방송사업자이다. 조지아 주의 애틀랜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콕스는 약 62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콕스는 SD(standard definition)와 HD(High definition) 두 방식 모두 서비스를 하고 있다. 2008년 2월부터 일부 지역에 대해 SDV(switched digital video) 설치를 실시해 왔지만, 현재까지 아날로그 방식의 전송을 중단할 다른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즉, 아날로그와 디지털 전송을 동시에 하고 있다.

다른 케이블사업자와 달리, 베이직TV와 같은 저가 상품이 없고, 서비스 기본 상품이 타 사업자가 제공하는 디지털방식의 채널 수와 비슷한 130개 이상이다. 따라서 콕스 가입자의 경우, 아날로그 TV를 이용하더라도 가장 낮은 가격의 서비스 상품인 <이코노미TV>의 비용이 타 사업자(ex, 타임워너케이블, 미디어컴 등)들이 제공하는 디지털TV 수신 상품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표 2-8〉 콕스 커뮤니케이션의 상품 내용

상품	채널 수	가격(달러)	온라인 특별할인	비고
이코노미TV	130개 이상	월34.99	3개월 간 월24.99달러	무료 HD 접속 가능
어드밴스드TV	250개 이상 음악채널선택○	월63.29	3개월 간 월49.99달러	
어드밴스드TV (프리퍼드)	320개 이상 음악채널선택○	월73.29	3개월 간 월59.99달러	
어드밴스드TV (프리미어)	370개 이상 음악채널선택○	월83.99	3개월 간 월70.69달러	

④ 미디어컴(Mediacom)

미디어컴(Mediacom)은 현재 미국케이블 방송사업자 중 8번째 큰 케이블 방송사업자이다. 주요 가입자 지역은 미드웨스턴과 사우스이스턴 지역이며, 중소도시에 집중적으로 케이블방송을 운영하고 있다. 2012년 기준 가입자 수는 약 100만 명 정도다.

미디어컴은 2013년 10월 15일부터 단계적으로 아날로그 전송 종료를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우선적으로 10월 15일까지 인기 있는 10개 채널에서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 방송만 전송할 예정이며, 10월 22일 추가로 11개 채널에 대해서도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할 예정이다. 10월 29일에는 채널2부터 채널 79사이에 남아 있는 모든 채널에서 아날로그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 방송을 시행할 예정이다. 디지털 전환이 완료된 10월 말 이후, 12개 HD채널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4년 10월 말까지 디지털전환 어댑터(DTA)를 무료로 대여하고(전체 채널시청가입자의 경우 가구당 3개까지 무료 대여), 2014년 11월부터는 일정 금액의 대여료(월 0.99달러)를 받고 디지털전환 어댑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Basic" 상품 가입자의 경우 2015년 11월1일까지 무료대여(가구당 2개까지) 하며 그 이후로는 월 0.99달러에 대여할 계획이다. 메디케어(Medicare: 국민의료보험제도)지원을 받는 저소득 계층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가구당 2개까지 무료 대여한다.

〈표 2-9〉 미디어컴의 디지털전환 채널 및 적용지역

1단계 디지털 전환 채널 목록	2단계 디지털 전환 채널 목록
ShopNBC Channel 2	WGN Channel 21
ION Channel 23	CSPAN Channel 28
Spike Channel 31	ESPN 2 Channel 36
Nickelodeon Channel 49	MTV Channel 39
SyFy Channel 58	USA Channel 41
Food Network Channel 62	Animal Planet Channel 48
WE entertainment Channel 63	Disney Channel 50
Hallmark Channel 64	HGTV Channel 57
truTV Channel 65	FX Channel 59
History Channel Channel 68	A&E Channel 69
	CNN Channel 70

적용지역: 조지아주의 도우허티 카운티, 쉬레이 카운티, 워스 카운티, 노스캐롤라이나의 랜들 프 카운티, 플로리다의 리 카운티,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섬터 카운티, 텍사스주의 터렐 카운티 등 7개 지역임

3) 요약 및 전망

FCC는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개별 케이블TV방송 사업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디지털 방송 수신을 위한 적합한 주변기기에 대해 무료 혹은 저가로 구매, 또는 대여해야함을 규정하고 있다.

FCC 가이드라인에 따라 미국 내 최대 케이블사업자인 컴캐스트는 한정베이직(Limited Basic) 상품 가입자 가구당 3개까지 무료로 디지털어댑터를 제공하며, 기타 상품 가입자의 경우 주된 수상기 1대에 대한 디지털어댑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추가 디지털어댑터가 필요 할 경우 월 1.99달러의 비용을 부과한다. 타임워너케이블의 경우는 일정기간 동안 월정액으로 장기 대여(약 월0.99달러)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내 세 번째로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콕스커뮤니케이션의 경우 자체적으로 디지털전송을 시행하지만, 아날로그방송을 종료할 계획은 없다. 다만, 콕스커뮤니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최저가 케이블 상품은 타사의 디지털상품과 가격차이가 크지 않다. 중소도시 중심의 미디어컴의 경우, 타임워너케이블과 유사한 가격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3년 10월말까지 디지털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미국 주요 케이블방송 사업자의 디지털 전환은 무료 혹은 저가의 디지털 어댑터를 판매 혹은 장기 대여하는 방식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시행하고 있다. 디지털방송 상품은 인터넷과 집전화 등의 서비스와 함께 번들링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저가 상품의 경우 약 월 30~50달러 수준의 통신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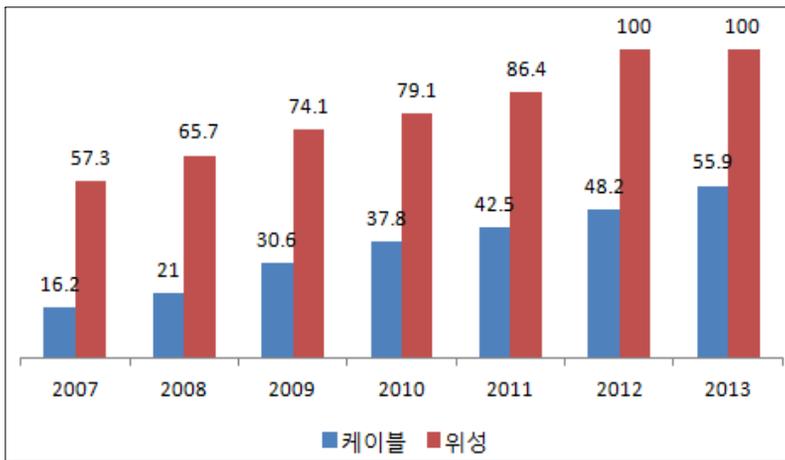
나. 독일¹⁴⁾

1) 디지털 전환 현황

독일 케이블방송은 2013년 들어 디지털상품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독일 케이블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2007년 16.2%에 불과하였지만, 이후 매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며 2013년에는 55.9%에 도달하였다. 특히 2013년 전년대비 7.7%의 상승한 부분은 케이블방송의 디지털화 추세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독일 케이블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경쟁매체인 위성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2007년에 이미 디지털화 50%를 돌파한 위성방송은 매년 5~8%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디지털 전환이 마무리된 2012년에는 전년대비 디지털화가 무려 13.6% 증가하기도 하였다.

[그림 2-3] 독일 케이블과 위성방송의 디지털화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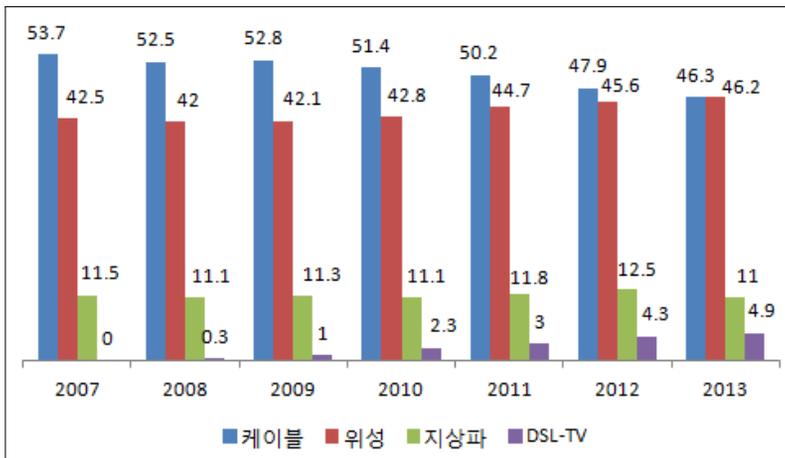


14) 독일 사례 조사는 김세환(독일 만하임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박사 과정)의 조사 자료에 기초함.

15) Die Medienanstalten(2013), Digitalisierungsbericht 2013, p.36 재구성.

이러한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격차는 케이블과 위성을 통한 텔레비전 방송 수신률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케이블을 통한 텔레비전 방송 수신률은 2009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2년에는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에 위성을 통한 수신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올해에는 케이블과 위성의 격차가 불과 0.1%에 불과한 상황이며, 내년부터 향후 독일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텔레비전 방송 수신 형태는 위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 방송을 제공하는 DSL-TV도 꾸준히 상승하며 2013년 4.9%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해당 기간 동안 독일 방송시장에서 디지털 전환을 제외하고는 큰 변동요인이 없었다는 점에서 다른 매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케이블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케이블방송의 전송방식 별 점유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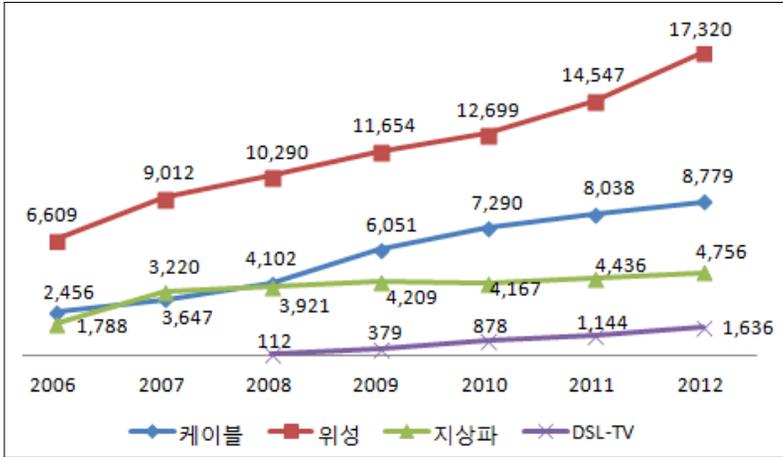
[그림 2-4] 전송방식 별 텔레비전 방송 수신 현황¹⁶⁾



16) Die Medienanstalten(2013), Digitalisierungsbericht 2013, p.38 재구성.

[그림 2-5] 전송방식 별 디지털방송 가구 현황¹⁷⁾

(단위: 천 가구)



디지털방송 시청가구를 살펴보면, 2012년까지 케이블을 통해 시청하는 가구는 총 877만 9천 가구로 전년대비 74만 가구가 증가하였다. 이것은 2006년의 245만 6천 가구에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쟁 매체인 위성방송에 비해서는 시청가구 수와 증가 속도 모두 부진한 상태다. 위성을 통한 디지털방송 시청가구는 2012년에 1,732만 가구에 달했으며, 이것은 전년대비 약 278만 가구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수치의 차이는 소규모 지역 케이블업체들이 비용 증가와 수익성 악화의 이유로 디지털 전환에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독일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축구와 영화에 있어서 위성방송인 Sky Deutschland의 콘텐츠 배급능력이 케이블방송 업체들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케이블을 통한 디지털방송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독일 최대 케이블업체인 Kabel Deutschland의 경우, 가장 저가 디지털방송 상품은 24개월 약정 기준 한 달 18.90유로의 시청료로 100여 개의 디지털 방송 채널과 16개의 HD급 채널을 제공하고 있다.¹⁸⁾ 독일 2위의 케이블업체인 Unitymedia의 경우, Kabel Deutschland와 동일한 약정기준으로 한 달 17.90유로의 시청료로 70여개 디지털 채널을 제공하고 있다.¹⁹⁾ 두 업체 모두 추가비용을 지

17) Die Medienanstalten(2012), Digitale Entwicklung in Berlin und Brandenburg, p.22 재구성.

18) <http://www.kabeldeutschland.de/digital-fernsehen>

19) <http://www.unitymedia.de/privatkunden/fernsehen/basistv-vertrag/digitaler-kabelanschluss/>

불할 경우 위성방송인 Sky Deutschland의 축구와 영화 관련 디지털방송 패키지를 시청할 수 있도록 옵션을 걸어놓았다.

2) 독일 케이블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법적 근거

독일 미디어정책을 총괄하는 미디어청(Medienanstalten)에서 케이블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제시한 독일 연방 차원의 정책은 부재한 상황이다. 디지털 방송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던 2001년에 미디어청의 공식입장을 표명한 문건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케이블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²⁰⁾ 이것은 미디어청 차원에서 방송사들과 협력하여 디지털 전환에 대한 캠페인을 전개한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다.

현재 독일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전국 단위의 방송 관련 법률들과 이에 의거한 하위 규정들에서는 케이블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규정과 진흥을 담은 부분이 없지만, 일부 주의 지역 방송법에서는 케이블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규정하고 있다. 브레멘(Bremen)주²¹⁾는 주 방송법 35조에 의거하여 주 정부와 주 미디어청은 디지털 기술로 케이블을 통한 공급에 영향을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 미디어청이 케이블업체 및 개별 주거경제의 주체들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사전 조건과 대책에 대해 합의하도록 하도록 규정한다. 헤센(Hessen)주²²⁾는 케이블관련 규정을 통해 케이블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규정 12조 2항에 따르면, 헤센주 미디어청은 케이블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 및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프로그램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²³⁾는 주 방송법 21조에 의거하여 디지털 케이블에 지역 공공방송프로그램이 나오도록 규정하였으나, 케이블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직접적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라인란트-팔츠(Rheinland-Pfalz)주²⁴⁾는 주 방송법 34조에 의거하여 주 미디어청이 케이블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 Die Medienanstalten(2001), Positionspapier der Landesmedienanstalten "Eckwerte für den Übergang analog/digital im Kabel".

21) Bremisches Landesmediagesetz.

22) Satzung über die Grundsätze der Kanalbelegung in Kabelanlage in Hessen.

23) Landesmediengesetz Nordrhein-Westfalen.

24) Landesmediengesetz Rheinland-Pfalz.

그러나 주 단위의 방송법을 통해 규정된 케이블의 디지털 전환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체화된 사례는 없다. 또한 주 단위 방송법의 관련 규정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케이블 대역을 확대하고, 다시 이를 통해 지역 공공 프로그램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케이블업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근거한 가이드라인과 정책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이것은 지상파방송과 달리 케이블방송과 관련된 사무는 전적으로 민간 분야이기 때문에 법률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강제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Sky Deutschland라는 전국 단위의 방송사업자가 거의 유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성방송과 달리 케이블방송은 지역 마다 상이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에 대한 통일된 의견을 형성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3) 케이블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업계의 입장

독일 케이블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다른 매체에 비해 더딘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요약할 수 있다²⁵⁾. 우선 '주거경제(Wohnungswirtschaft)'의 문제가 제기된다. 현재 케이블방송 가입자들은 30개가 넘는 아날로그 무료방송을 아무런 문제없이 시청하고 있다. 이는 아날로그 케이블방송이 추가 수신기 없이, 안테나만으로도 가정에서 수신이 가능하도록(Plug & Play)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날로그 케이블방송은 여타 다른 방송 수신 방식과 비교했을 때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시청이 가능한 수단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독일의 많은 시청가구들은 아날로그 케이블방송과 장기간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날로그 케이블방송의 중단은 각 시청가구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미디어청은 케이블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독일 전역에서 약 2,000만 대의 디지털 수신기가 필요하며 이것은 20억 유로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외에도 노후한 통신망 개선을 위해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의 개별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과, 케이블 고객들이 아직까지는 디지털 방송콘텐츠의 부가가치보다는 아날로그 케이블방송 이용의 기술적 용이성에 만족하고 있다는 점도 주거경제 측면에서 케이블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더딘 이유들이다.

둘째, 불확실한 디지털 케이블방송 사업모델이다. 케이블방송 업체들은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위성방송 등 여타 매체로의 고객 이탈이 가속화될 것을 우려

25) ANGA(2009), Positionspapier zur Digitalisierung.

하고 있다. 현재 케이블방송 업체들에게 아날로그 전송방식인 이른바 Plug & Play 형태는 업체 수입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동시에 차별화된 경쟁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현실점에서 아날로그 방송이 중단될 경우 이러한 장점이 훼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독일 연방정부의 주요 통신정책 중 하나인 광대역망 확충에 발맞춰 업체들은 케이블을 통한 방송,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리플서비스를 위해 매년 막대한 비용을 인프라 개선에 투자하고 있다. 결국 디지털 전환을 통해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분명한 사업 모델이 아직까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날로그 방송의 강제중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객 이탈은 합리적인 가격의 트리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케이블 업체들의 투자와 혁신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풀HD급 디지털 방송콘텐츠로 인해 방송사들의 제작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구매해 방송하는 케이블방송 업체들의 추가비용도 예상된다. 반면 현재 독일 방송시장에서 디지털방송용 고품질 프로그램의 제작과 공급은 무료지상파 공영방송에 한정되어 있다. 결국 디지털방송용 콘텐츠가 무료지상파를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케이블 가입자들이 추가 비용을 지불해가며 디지털 케이블방송에 가입할 이유가 없다는 점은 케이블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공정한 접근이 보장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케이블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신규 고객을 유인할 만한 디지털 방송콘텐츠의 제작과 이에 대한 케이블방송 업체들의 차별 없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콘텐츠에 대한 접근은 시장원리에 따른 조건으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명확한 합의가 부재한 상황이다. 가령 공영방송인 ARD와 ZDF는 자사 제작의 HDTV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적인 전송비용을 케이블업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과 전송을 위해 이미 시청자들의 수신료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으로 다시 한 번 전송비용을 케이블방송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이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결국 디지털방송용 프로그램의 부족과 이에 대한 케이블방송 업체들의 접근권이 제한된 상황이 케이블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가로막는 이유로 제기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이유들에 대해 케이블방송 업계는 아날로그 방송의 중단과 디지털 전환은 시장 원리에 따라 케이블방송 시장의 이해당사자들의 합의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즉, 독일 케이블방송 업계는 케이블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케이

블 네트워크만의 자체적 논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장기적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성방송과 같이 시한을 명기하여 디지털 전환을 추구하는 방식의 도입에 대해, 어떠한 기술로 자사가 보유한 네트워크를 운영할 지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케이블업체의 배타적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독일 전역에 걸친 아날로그 전송의 중단은 디지털 케이블을 통한 이용률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을 때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일례로 아날로그 위성방송의 중단 역시 디지털 전환율이 70%를 넘었을 때 해당 이해당사자들이 강제적 디지털 전환 기한이 합의하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케이블방송 업계가 디지털 전환의 시기를 강제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케이블방송 업계가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업계는 케이블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다음의 정책적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⁶⁾ 첫째,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공정한 접근 보장이다. 케이블방송 업체들은 HDTV와 텔레미디어 등 디지털 방송과 관련된 모든 콘텐츠에 대해 시장원칙에 입각한 조건에 의거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방송법상으로 보장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대형 방송사 역시 케이블방송업체와 협력하여 VOD와 같은 새로운 수요창출에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소비자들의 디지털TV 교체를 위한 지원책을 주장하고 있다. 케이블방송 가입자들이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디지털방송 수신기의 구매이다. 케이블방송 가입자들에게 최소한 이에 대한 비용을 요구하려면 셋톱박스에 대한 보조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케이블방송 업계는 미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에서 시행중인 디지털전환 관련 기금 조성 및 셋톱박스 구매 교환권 등을 독일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셋째,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디지털 방송에 대한 감세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벨기에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세금 축소에 따른 디지털 방송 콘텐츠의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개선을 주문하고 있다. 이미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등장하였던 캠페인의 전개가 케이블 방송에도 필요하다

26) ANGA(2013), ANGA Tätigkeitsbericht 2013.

고 보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디지털 케이블방송의 장점을 설명하는 커뮤니케이션 정책과, 정부 및 미디어청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니셔티브는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4) 요약 및 전망

독일 케이블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2013년 50%를 돌파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다른 매체에 비해서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것은 케이블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달리 미디어정책을 총괄하는 미디어청이 케이블방송의 디지털 전환에는 아직까지 정책적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케이블 업계도 위성방송의 방식과 같은 기한을 명기한 강제적 디지털 전환에 반대하고 있다. 이것은 디지털 전환으로 발생하는 수익 악화를 우려한 동시에, 신규 고객을 유치할 만한 디지털 방송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케이블방송 업계는 원활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공정한 접근 보장,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국민 캠페인의 전개를 요구하고 있다.

다. 영국

영국의 유일한 전국 케이블사업자인 Virgin Media는 2008년 5월 12일 아날로그 종료 계획을 발표했다. Coventry와 Glasgow 지역의 경우 2008년 5월에 종료하고, 지역별로 순차 종료 방식을 적용, 완전 종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Digital Spy, May 12 2008). 이 계획에 따르면 Liverpool, Birmingham 일부 지역은 2008년에, Bristol, Edinburgh는 2009년, Manchester, Southampton, Leicester 지역 등은 2010년, Nottingham 2011년, Westminster 2012년, Harrow 2013년으로 계획되어 있다.²⁷⁾

발표 당시 20만 가구가 30여개 채널을 시청할 수 있는 아날로그 서비스 가입자였고, 아날로그 방송 종료 지역 중에서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상품이 제공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 대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²⁸⁾

27) <http://www.cableforum.co.uk/>, Jan. 11, 2008.

28) off-network로 불리는 이 상품은 전화, DSL 브로드밴드, 디지털 지상파TV셋톱박스를 포함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위성방송은 2001년에 아날로그 서비스를 종료했으며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은 지역별 순차 종료방식을 적용하여 2012년 10월 북아일랜드 지역을 마지막으로 종료가 완료되었다.

라. 네덜란드

케이블사업자 Caiway와 Rekam은 2010년 10월 10일 네덜란드에서는 처음으로 아날로그 서비스를 종료하였다.²⁹⁾ Caiway는 네덜란드 서부 지역에 거점을 둔 케이블 업계 4위의 사업자로 아날로그 서비스 종료 당시 15만 가입자의 95%가 디지털로 전환된 상황이었다.

아날로그 가입자의 경우 59유로에 제공되는 디지털셋톱박스를 선택하거나, 대안으로 19.9유로의 케이블튜너 선택이 가능했다. 이 디지털상품(basic digital cable)은 21개 주요 채널을 DVB-T로 제공하는 저렴한 형태의 상품으로, 보급형 디지털 상품의 경우 Discovery, Disney, Viacom(MTV, Nickelodeon), Fox 등 주요 채널을 포함하고 있다.

케이블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IPTV나 위성방송으로 가입자 이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3년 5월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아날로그 종료를 완료한 Rekam의 시장 점유율은 2008년 6월 기준 80%에서 2013년 3월 기준으로는 54%로 감소한 반면 아날로그를 종료하지 않은 Ziggo, UPC의 경우 2013년 3월 기준으로 각각 70%, 60%로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Ziggo와 UPC 두 케이블 사업자는 현재 30여개 내외의 채널로 구성된 기본형 아날로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날로그 종료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³⁰⁾

마. 스위스

GGA Maur는 2013년 12월 2일 스위스에서 처음으로 아날로그 종료 계획을 발표하였다.³¹⁾ 가입자들은 선택 가능한 다양한 수신기를 통해 암호화되지 않은(unencrypted) 50개의 디지털 채널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형(basic package) 상품을 제공받게 된다. 구형 TV를 보유한 가정은 무료로 디지털 컨버터를 사업자로부터 대여할 수 있으며, 수신기 종류로는 별도의 셋톱박스가 필요 없는 일체형(integrated) DVB-C 케이블 튜너 등이 있다.

29) Screen Digest(October 08, 2010).

30) Broadband TV News(May 21, 2013).

31) Rapid TV News(May 28, 2013).

GGA Maur는 쥐리히의 Lake Greifen 지역에 기반을 두고 24,500 가구에 TV,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이 중 13,600 가구가 44개의 채널을 제공하는 아날로그 TV 가입자이다. 다른 스위스 케이블 사업자의 경우 아날로그 종료 계획이 없으며 대신 연차적인 아날로그 가입자 감소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GA Maur는 2013년 2월부터는 모바일 기기에서 25개의 HD 채널을 포함해 100여개의 채널을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바. 인도

4개 대도시(뭄바이, 델리, 콜카타, 첸나이)에서 2012년 10월 말 아날로그 종료 계획을 발표했다.³²⁾ 4개 지역의 주요 MSO(Hathway Cable & Datacom, Den, Siticable, Digicable)는 영어 영화 채널을 시작으로 채널별 순차 종료 방식을 적용했는데, 이는 방송사와 규제당국인 정보방송부(MIB, Ministry of Information and Broadcasting) 간의 수차례 협의 끝에 결정한 것이다.

- 영어 영화 채널: 2012년 10월 10일 오후 11시
- 힌디어 GEC(오락) 채널: 2012년 10월 12일 오후 2시~4시
- 힌디어 영화 채널: 2012년 10월 15일 오후 11시
- 뉴스(영어, 힌디어, 비즈니스) 채널: 2012년 10월 18일 오후 11시

정보방송부는 디지털 전환 보고서에서 4개 도시의 경우 케이블TV 가입 가구의 77%에 셋톱박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디지털 가입가구 비율은 뭄바이 99%, 델리 66%, 콜카타 73%, 첸나이 59%로 밝히고 있다.

인도 케이블 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통신규제청(Telecom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의 주도로 2010년까지 주요 도시의 아날로그 종료를 목표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정보방송부 간의 협의 과정에서 몇 차례 연기되어 현재 2013년 말 종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³³⁾ 이 계획에 따르면 4개 대도시를 우선 종료하고 인구 100만 명이 넘는 35개 주요 도시, 그보다 적은 규모의 도시, 그 외 지역의 순서로 단계별로 종료할 예정이다.

32) Business Standard(October 11, 2012).

33) 정용찬 외(2012).

방갈로르의 경우 2013년 4월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이 종료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케이블 사업자가 종료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하는 사례도 발생했다.³⁴⁾

2. 주요국 사례 시사점

주요국의 아날로그케이블 방송 종료 사례를 통해 규제기관의 정책을 살펴보면 세 가지 유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업자 자율형으로 독일, 영국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이에 해당한다. 규제 기관이 케이블 사업자의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관해서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유형이다.

둘째, 아날로그케이블 방송 유지 기간만을 정하고 해당 기간 이후에는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최소 관여형으로 미국, 일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적극 개입형으로 인도의 경우 규제기관이 아날로그 종료 시점을 정해 놓고 독려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표 2-10〉 주요국의 아날로그케이블 디지털 전환 규제 유형별 특징

유형	해당 국가	특징
사업자 자율	독일, 영국 등	규제기관이 케이블방송의 아날로그 종료에 대해 사업자 자율에 맡김
최소 관여	미국, 일본	규제 기관이 가입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만 부여하고 나머지는 사업자 자율에 맡김 미국, 일본의 경우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 유지 기간을 정해(미국은 3년, 일본은 3년 8개월) 가입자 보호 유지 기간 이후는 사업자 자율에 맡김
적극 개입	인도	규제 기관이 아날로그 종료 시점을 정하고 사업자 독려 인도는 도시 규모별로 종료 시점을 달리하며, 채널별 순차 종료 방식 적용

34) The Times of India(Apr. 18, 2013).

주요국의 아날로그케이블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첫째,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정 기간 동안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 유지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는 지상파의 아날로그 방송 종료 이후 아날로그 상품 가입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다.

둘째, 디지털 전환 시에도 낮은 가격의 아날로그 가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는 추가 요금 부담 없이(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어댑터나, 셋톱박스를 지원해 최소한의 시청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케이블 방송 초기 가입자의 경우 지상파 수신 곤란을 이유로 가입한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치는 우리 상황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 2-11〉 주요국의 아날로그케이블 디지털 전환 시 조치 사항

국가	특징
미국	(FCC) - viewability rule 제정: 지상파 아날로그방송 종료(09. 6. 12) 후 3년 동안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아날로그로 변환하여 재송신 제도화 - 이 규칙은 제정 당시 2012년 6월 11일까지 유효한 일몰제를 적용 - FCC는 2012년 6월 11일 만장일치로 2012년 12월까지 연장 (Comcast) Limited Basic: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가구당 3개의 디지털어댑터로 방송시청 가능 (Time Warner Cable) 2014년까지 케이블 셋톱박스로 연결되지 않는 모든 가입자에 무료로 디지털 어댑터 제공(단, 2015년 1월부터는 월 99센트 비용 부과) (Mediacom) 2014년 10월 말까지 디지털전환 어댑터(DTA) 가구당 3개 무료 대여(2014년 11월부터 월 0.99달러 대여료 부과)
네덜란드	(Caiway, Rekam) - 59유로에 제공되는 디지털셋톱박스 - 19.9유로의 케이블튜너(21개 주요 채널을 DVB-T로 제공) * 전환 과정에서 IPTV나 위성방송으로 가입자 이탈
영국	셋톱박스 설치 시 무료 지상파 디지털 채널 시청 가능

제3장 방송서비스 종료 승인과 가입자 보호 방안

제1절 방송서비스 종료 관련 쟁점과 이슈 분석

1. 쟁점

아날로그 유료방송서비스 종료와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쟁점과 이슈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날로그 유료방송서비스 종료에 대하여 승인제 또는 신고제와 같은 규제가 필요한지 여부이다. 즉, 아날로그 케이블방송서비스 종료 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지 아니면 종료 신고로 충분한지가 문제이다. 이 경우 승인제와 신고제 중 어느 것이 가입자 보호를 위해 적합한 제도인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아날로그 유료방송서비스의 종료에 대한 규제를 사전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후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서 사전규제와 사후규제의 설계와 관련이 된다.

둘째, 가입자 보호의 관점에서 아날로그 케이블방송서비스 최소 유지 기간에 관한 문제이다. 아날로그 케이블방송서비스의 최소 유지기간과 관련해서 몇 가지의 쟁점이 있다. 가입자 보호의 관점에서 아날로그 유료방송서비스 최소 유지 간을 두는 경우 가입자 및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가 문제이고, 최소 유지기간은 결과적으로 가입자의 시청권과 유료방송사업자의 영업권의 충돌 문제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기본권 충돌 시 해결방안으로 아날로그 유료방송서비스 종료를 사업자 자율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제도화(법제화) 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셋째, 위에서 살펴본 쟁점과 이슈에서 제기된 아날로그 유료방송서비스 종료에 대한 규제와 아날로그 유료방송서비스 최소 유지기간 보장과 같은 시청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새로운 법률 제정이나 「방송법」 개정을 하지 않고 현행 「방송법」 체제에 있는 제도를 통해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아날로그 유료방송서비스의 종료에 대해 승인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변경허가 제도 또는 유료방송 약관승인 제도로 갈음할 수 있는지와 행정지도를 통해 가능한지가 쟁점이 될 것이다. 현행 「방송법」 체제하

에서 제도를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2. 아날로그 유료방송서비스 종료의 승인 또는 신고에 관하여

가. 아날로그 유료방송서비스 종료에 대한 주무관청의 개입 정도

1) 개요

아날로그 유료방송의 종료는 사실상 아날로그 유료방송의 사업 폐지에 준하는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사업의 휴지·폐지에 준하는 가입자에 대한 보호조치 내지 주무관청의 승인 또는 신고 절차가 필요하다.

「방송법」은 사업의 휴지·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³⁵⁾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2조와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와 제26조(별정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서 사업의 휴지·폐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업의 휴지·폐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의 휴지·폐지에 대한 주무관청의 개입 정도는 다르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경우에는 사업의 휴지·폐지 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미래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자의 경우에는 미래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미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별정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미래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의 휴지·폐지 시 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35) 방송법에서는 유료방송의 이용요금과 기타 조건에 관한 약관은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신고한 약관이나 승인을 얻은 이용요금을 변경할 경우 다음과 같이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77조(유료방송의 약관 승인) ① 유료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이용요금 및 기타 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고한 약관이나 승인을 얻은 이용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이 현저히 부당하여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을 기준으로 상당한 기일 전에 그 내용을 통지하고 주무관청에 승인 또는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이용자(전기통신사업법의 경우) 또는 가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경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이러한 가입자 보호조치를 위해서 규제정도가 심한 승인이 아닌 신고로서 충분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신고의 개념 및 종류

일반적으로 신고란 사인이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계 행정청에 일방적인 통고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신고가 있으면 공법적 효과를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한다. 신고에는 크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신고유형 중에서 행정청의 실질심사행위를 요하는 경우이며, 외형상으로도 신고일 뿐 실질적으로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이에 따라 행정청이 당사자 행위의 가부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구조를 취하므로 사실상 행정청의 허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즉,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고행위를 접수하여 형식적 요건 외에 적법성 및 합목적성 등의 실질적 사항의 심사를 거쳐 이를 충족하는 때에 수리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그 효과에 있어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상태의 신고행위만으로는 공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지 못하고 행정청의 수리의 의사표시가 존재한 후 비로소 공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고, 행정청의 신고수리거부 및 수리취소에 대하여 당사자는 행정쟁송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원래의 신고를 의미하며, 당사자의 신고행위가 법령상 요구되는 요건을 충족하면 그 자체로서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며, 행정청의 별도의 수리행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 효과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신고행위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그 자체로서 신고행위로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3)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서비스의 종료에 대한 규제기관의 개입 정도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서비스의 종료에 관한 규제기관의 개입은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가능하지만, 중요한 쟁점은 가입자 보호에 가장 적합한 수단이 사전적 접근인지 사후적 접근인지가 문제라고 할 것이다.

먼저 신고의 성질상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실질적으로 허가이므로 아날로그 케이블 방

송서비스의 종료를 허가로 결정하는 경우 일반적인 금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허가의 성질상 사업자는 규제기관의 재량에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서비스의 종료 결정이 매우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한편,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에는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서비스는 사업자가 언제든 신고를 함으로써 종료되어 가입자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가입자 보호를 위해서는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는 경우보다 규제정도가 강한 허가 가 더 적합하지만, 허가는 사업자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규제정도에서 신고와 허가의 중간이라고 할 수 있는 승인이 가입자 보호와 사업자의 자율성이라는 양자를 균형있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 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상 별정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그 사업의 휴지·폐지 시 규제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의 휴지·폐지 시의 경우만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가입자 보호 측면에서는 신고제보다 승인제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할 것이다.

나. 아날로그 유료방송 종료 승인의 법적 성질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서비스의 종료 승인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승인이 강학상(講學上) 허가, 특허, 인가 중 어디에 속하는지가 문제이다.

허가는 상대적인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특정의 상대방에게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행할 수 있게 하여 주는 처분을 말한다. 허가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에 대하여 기속행위란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가 어떠한 요건 아래에서 어떠한 내용의 행위를 할 것인가의 문제를 일의적·확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기관은 특정한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특정한 결정을 발령하여야 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재량행위는 행정법규가 다의적·불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통하여 행위요건의 판단 또는 행위효과의 결정에 있어서 행정기관에게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의 행정작용을 말한다.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에 대하여 학설은 행정행위의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에서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 재량행위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속행위라

는 요건재량설과 법률효과의 내용에 따라 부담적 행정행위의 선택과 관련되는 것은 기속 행위이고, 수익적 행정행위의 선택과 관련된 행위는 재량행위로 보는 효과재량설이 대립하고 있다. 판례는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³⁶⁾

특허란 특정의 상대방을 위하여 새로이 권리나 능력을 설정하거나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특허는 허가와 구별이 쉽지 않는 바, 허가는 금지해제행위로서 명령적 행위이나, 특허는 설권행위로서 형성적 행위이고, 허가는 신청행위 없이 행해지기도 하나, 특허는 항상 신청을 전제로 한다.

재량행위성 여부에 관하여 법률규정상의 표현이 주요한 기준이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허가는 기속행위로서 인정되나 특허는 재량행위로서 성질을 가지며, 허가는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 행해지나, 특허는 적극적으로 공공복리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³⁷⁾

한편, 인가는 타인의 법률행위에 동의를 부여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보충함으로써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실정법상으로는 허가나 승인 등의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며, 사인의 행위를 전제로 하는 점에서 그 자체가 독립적인 허가나 특허와 구별된다. 인가는 당사자의 행위가 갖는 공익적 성격으로 인하여 일정한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당사자 사이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그 효력을 완성하도록 하는 의미를 갖는다. 인가는 법률적 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므로, 인가를 요하는 행위를 인가 없이 행한 경우에는 그 행위는 무효가 된다.

위에서 살펴본 강학상 허가, 특허, 인가 중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의 종료에 대한 승인은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독립적인 행위인 허가 및 특허와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의 종료에 대한 승인은 강학상 인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36)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820 판결.

37) 류지태, 박종수, 『행정법 신론』, 박영사, 2010. 3. 제173면.

3. 아날로그 유료방송서비스의 종료 승인과 변경허가에 관하여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서비스의 종료 승인을 변경허가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먼저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서비스의 종료 승인과 변경허가가 사전규제인지 사후규제인지 여부에 대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사전규제와 사후규제³⁸⁾

사전규제(Ex-ante regulation)란 행정주체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객체의 법률행위 이전에 법령 등을 통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전규제의 유형별로 「방송법」상 사례를 들면, ①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방송법」 제9조제1항), ② 방송채널사용사업·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방송법」 제9조제5항), ③ 누구든지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방송법」 제8조제2항)

사후규제(Ex-post regulation)란 행정주체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객체가 어떤 행위를 한 후에 법령 등을 통해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와 같은 규제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후규제는 주로 사업자가 경쟁사업자 또는 이용자에게 행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구조규제에서도 사후규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

「방송법」상 구체적인 규정을 예로 들면, ①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1. 대표자, 2. 방송편성책임자, 3. 법인명 또는 상호,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방송법」 제15조제2항), ②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방송법」 제85

38) 박성철, 『융합시대에 대응한 방송통신 시장의 경쟁 환경 조성 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12. 12. 제58면이하 요약.

조의2제1항).

나. 사전규제와 사후규제의 구별³⁹⁾

현실에서 적용되는 법령에서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고, 사전규제와 사후규제의 구별은 실제 규제를 시행하거나 집행하는 규제기관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는 개념상으로는 행위를 기준으로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규제)가 사전/사후에 있느냐에 따라 구별되는 것이므로 행위와 규제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구별이 용이하다.

행위와 규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규제인지 사후규제인지가 불분명하므로 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형태적인 구별 외에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 규제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전제로 하는데, 행위를 기준으로 위법성 판단이 사전/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사전/사후규제를 구별한다.

〈표 3-1〉 사전규제와 사후규제의 구별기준

행위/규제	기준	사전규제	사후규제
행위/규제의 구분이 명확한 경우	규제시점 기준	행위 이전에 규제를 부과	행위 이후에 규제를 부과
	규제기관과의 관계	행위 이전 규제기관의 허가·승인·인가 등 사전절차 수반	행위 이후에 규제기관에 신고 등 사후절차 수반
행위/규제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위법성판단 시점 기준	행위 이전에 규제위반에 대한 위법성판단이 이루어짐	행위 이후에 규제위반에 대한 위법성판단이 이루어짐
	위법성판단 기준 명확성 정도	사전에 구체적인 규제 내용 및 기준이 명확함	기준이 일반적/추상적이어서 행위 이후에 비로소 규제의 내용 및 위법성 판단이 명확해지는 경우
	위법성판단 시 규제기관 역할	사실관계 확인 위주	행위의 허용여부, 위법성 판단이 사후적으로 진행

39) 박성철, 『융합시대에 대응한 방송통신 시장의 경쟁 환경 조성 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12. 12. 제60면 이하 요약.

따라서 규제를 기준으로 위법성 판단기준이 명확하여 규제기관의 위법성 판단이 필요 없거나 단순히 사실만 확인하는 경우 사전규제에 해당하고, 규제기관의 위법성 판단이 사후적으로 필요한 경우 사후규제에 해당한다.

다. 사전규제와 사후규제의 설계 원칙⁴⁰⁾

아날로그 유료방송서비스 종료 승인은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제에 해당한다. 이러한 규제가 필요하다면,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중 어떤 것이 적합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제를 시행할 당시의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전규제로 할 것인지 또는 사후규제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특히 이용자의 안전과 관련된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심각한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전규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비상사태 시 인터넷전화(VoIP) 사업자에게 긴급통화 서비스와 관련된 요구 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이용자의 안전과 관련된 경우에 해당하고 이때는 규칙주의 사전규제(rule-based ex-ante system)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사전규제에 대하여 규제의 준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인 조사(periodic inspection)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는 단순히 시장에서 사업자 간 공정경쟁과 이용자 이익저해 관련 사후규제만으로는 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워 적절한 사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즉 취약계층의 범위 또는 지원방안 등을 사전에 규정해 놓아야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가 있다.

다만 심각한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과거 유선시장의 경우처럼 독점사업자가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y)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규칙주의 사전규제(rule-based ex-ante system)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반면, 경쟁이 활성화된 경우에는 보다 융통성 있는(flexible) 규제인 사후규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0) 임 준 외, 『방송통신 진화에 따른 규제체계 고도화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10. 12. 제64면 요약.

아날로그 유료방송서비스의 종료 승인의 경우 가장 중요한 사항이 가입자 보호계획과 시청권 보장을 위한 최소 유지기간 보장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가입자 보호계획과 관련하여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로서 취약계층의 범위 또는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입자 보호계획, 취약계층의 시청권 보장 등을 위해서는 아날로그 유료방송서비스의 종료 승인제도는 사전 규제로 설계하는 것이 적절하다.

4. 아날로그 유료방송서비스의 종료 시 최소 유지 기간에 관하여

가. 아날로그 유료방송서비스 유지의 장·단점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서비스의 종료 시 가입자 보호조치로 최소 유지기간을 설정하자는 논의가 있다.

최소 유지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입자 보호조치로서 실효성이 있는가의 문제이다.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디지털 텔레비전을 구입하거나 디지털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저소득층의 경우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서비스를 유지하는 것이 저소득층의 시청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서비스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시청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서비스의 유지 사례로 미국의 경우 3년 6개월의 유지기간을 보장한 바 있다. 다만, 이러한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서비스의 최소 유지기간 보장은 결과적으로 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는 디지털 케이블 방송서비스와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서비스를 병행해야 하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나. 기본권의 충돌

이는 결과적으로 헌법상 저소득층의 시청권과 유료방송사업자의 영업권이 충돌하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기본권의 충돌이란 복수의 기본권 주체가 서로 충돌하는 권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해 각기 대립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기본권 충돌의 사례로는 언론 보도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같이 언론기관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가 충돌하거나 노사분규에서 사용자의 재산권 내지 기업의

직업의 자유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이 충돌하는 경우 등이 있다. 한편,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종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는 양 당사자의 기본권이 침해하게 대립할수록 국가의 개입에 의한 해결의 당위성 내지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다. 기본권 충돌 시 해결 방안

이러한 기본권 충돌의 경우 입법자의 자유로운 입법형성을 통해 해결하려는 입법의 자유영역이론, 기본권 간의 서열을 통해 우월적인 기본권을 우선시키는 기본권의 서열이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아니하면서 충돌하는 기본권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실제적 조화의 이론,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기본권의 해석을 통해 규범영역을 벗어난 비전형적인 기본권행사를 당해 기본권의 내용으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기본권 충돌을 해결하는 규범영역의 분석이론 등이 있다.

이에 대하여 제1차적인 준거로서 기본권 해석을 통해 의사충돌을 제외시키고, 제2차적인 준거로서 법익형량이나 형평성의 원칙을 통해 대안을 찾아내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1차적, 제2차적인 준거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마지막으로 입법을 통해 해결을 하는 방법이 있다.⁴¹⁾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서비스의 최소 유지기간은 결국 저소득층의 시청권과 유료방송사업자의 영업권의 충돌이며, 이러한 충돌을 규범조화적으로 헌법해석을 통해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입법적인 해결을 하는 경우에도 양자의 기본권을 조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의 시청권을 보장하되 유료방송사업자의 영업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가입자 보호조치를 수반하는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서비스의 종료 승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저소득층의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 유지기간을 설정하되, 유료방송사업자의 영업권 보장을 위한 종료 승인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41) 권영성, 『신판 헌법학 원론』, 법문사, 1999. 9. 제311면 이하.

제2절 아날로그 유료방송서비스 종료에 대한 현행 방송법령의 적용 여부

아날로그 유료방송서비스 종료 및 디지털 전환에 관하여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방송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현행 「방송법」이나 그 시행령을 통해 아날로그 유료방송서비스의 종료에 대한 규제 및 시청권 보호를 위한 가입자 보호 방안을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날로그 유료방송서비스 종료 및 디지털 전환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방송법」을 개정하는 방안은 의원입법이나 정부입법 어느 방법이든지 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이렇게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서 현행 「방송법」 및 그 시행령을 통해 아날로그 유료방송서비스 종료 및 디지털 전환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1. 변경허가 제도를 통한 아날로그 유료방송서비스 종료 승인의 대체 여부

먼저, 현행 「방송법」 하에서 아날로그 유료방송서비스의 종료 승인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변경허가제도와 유료방송의 약관승인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방송법」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당해 법인의 합병 및 분할,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법인사업으로의 전환,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 방송분야의 변경, 방송구역의 변경,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15조제1항 전문).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변경허가하기 전에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15조제1항 후문).⁴²⁾ 「방송법」

42) 제15조(변경허가등) 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8항, 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2. 12. 18, 2008. 2. 29, 2013. 3. 23>.

1. 당해 법인의 합병 및 분할.
2.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법인사업으로의 전환.
3. 삭제 <2006. 10. 27>.

은 변경허가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아날로그 유료방송의 종료 승인과 관련 되는 내용은 제7호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이다. 「방송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이라는 방송구역의 변경을 초래하는 주전송장치의 변경(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주전송장치 설치장소의 이전을 포함한다)과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의 적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운용채널 또는 시설의 변경을 말한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방송구역의 변경을 초래하는 주전송장치의 변경의 경우 아날로그 유료방송의 종료는 방송구역의 변경과 관련이 없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다. 다음으로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의 적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운용채널 또는 시설의 변경에 관해서는 살펴보면, 이는 운용채널 또는 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기술기준의 적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유료방송 아날로그 종료로 인한 디지털 전환도 결국은 아날로그 및 디지털 유료방송의 전송방식이나 주파수 대역 및 채널당 주파수 대역폭 등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하므로 아날로그 유료방송의 종료가 기술기준의 변경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방송법」 제15조제1항의 변경허가는 아날로그 유료방송의 종료와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변경허가로 아날로그 유료방송의 종료 승인을 갈음할 수는 없다.

2. 약관승인 제도를 통한 아날로그 유료방송서비스 종료 승인의 대체 여부

다음으로 유료방송 약관승인에 대하여 살펴본다. 「방송법」에 따르면, 유료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는 이용요금 및 기타 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신고한 약관이나 승인을 얻은 이용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법 제77조제1항). 아날로그 유료방송의

-
4.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
 5. 방송분야의 변경.
 6. 방송구역의 변경.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종료는 유료방송사업자와 가입자 사이에서는 아날로그 유료방송서비스의 제공중단에 해당하므로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계약해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계약해지 사유는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이다.

일반적으로 신고란 사인이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계 행정청에 일방적인 통고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신고가 있으면 공법적 효과를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한다. 신고에는 크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신고유형 중에서 행정청의 실질심사행위를 요하는 경우이며, 외형상으로는 신고일 뿐 실질적으로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고 행정청이 당사자 행위의 가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구조를 취하므로 사실상 행정청의 허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즉,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고행위를 접수하여 형식적 요건 외에 적법성 및 합목적성 등의 실질적 사항의 심사를 거쳐 이를 충족하는 때에 수리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그 효과에 있어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상태의 신고행위만으로는 공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지 못하고 행정청의 수리의 의사표시가 존재한 후 비로소 공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고, 행정청의 신고수리거부 및 수리취소에 대하여 당사자는 행정쟁송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원래의 신고를 의미하며, 당사자의 신고행위가 법령상 요구되는 요건을 충족하면 그 자체로서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며, 행정청의 별도의 수리행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 효과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신고행위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그 자체로서 신고행위로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유료방송 약관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원래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적극적인 개입이 아닌 신고접수라는 소극적인 개입에 한정된다. 한편, 아날로그 유료방송의 종료 승인에 있어 승인은 당사자의 행위가 갖는 공익적 성격으로 인하여 일정한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당사자 사이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그 효력을 완성하도록 하는 의미를 갖는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신고접수와 같은 소극적 개입이 아닌 적극적 개입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는 인가의 성질을 갖는 아날로그 유료방송의 종료 승인을 소극적 개입을 의미하는 신고로 대체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아날로그 유료방송의 종료 승인을 유료방송 약관의 신고 및 승인제도를 통해 대체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행정지도를 통한 가입자 보호 및 아날로그 유료방송서비스 종료 승인의 대체 여부

현행 「방송법」에 규정된 제도를 통해 아날로그 유료방송의 종료 승인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지 않으면서 아날로그 유료방송의 종료 승인을 대체하는 제도로 행정지도가 마지막으로 검토될 수 있다.

행정지도는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며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의미하며, 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방송법 제76조의4), 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방송법 제76조의5)와 같이 법령에 근거를 둔 행정지도와 조직법에 의해서 부여된 행정기관의 일반적 권한에 의하여 행해지는 행정지도처럼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가 있다. 또한 기능에 따라 중소기업이나 농민에 대한 기술지도, 일정한 사인에 대한 장학지도와 같은 조성적 행정지도, 물가억제를 위한 가격지도와 같은 규제적 행정지도, 중소기업의 계열화 촉진, 노사간의 쟁의조정이나 지도와 같은 조정적 행정지도가 있다.

행정지도의 경우 사실상 강제성이 있고, 행정지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통한 권리구제가 인정되지 않고 있어 권리구제수단이 불충분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아날로그 유료방송의 종료와 관련해서는 「방송법」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지도가 가능하다고 보여지지만, 행정지도도 행정작용인 이상 최소한의 조직법적 근거는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즉, 행정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소관사무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아날로그 유료방송의 종료에 대해서 「방송법」에 직접적인 행정지도 근거는 유료방송 사업의 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아날로그 유료방송의 종료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조직법적 근거는 있다고 할 것이다.

행정지도와 아날로그 유료방송의 종료에 관해 살펴보면, 아날로그 유료방송의 종료 승인에서 승인은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고 인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행정작용이므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데, 법적인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로써 아날로그 유료방송의 종료 승인을 갈음할 수는 없다, 다만, 아날로그 유료방송의 종료 승인 시 포함되는 가입자 보호계획이

나 시청권 보장을 위해 아날로그 유료방송의 최소 기간 유지는 행정지도를 통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지도는 사실상 강제성은 있으나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통한 권리구제가 인정되지 않는 등 권리구제수단이 불충분하다는 단점이 있어 가입자 보호계획이나 아날로그 유료방송 최소 기간 유지 등 시청권 보장을 위한 수단이나 방법에 관해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시키는 행정작용으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아날로그 유료방송의 종료 및 디지털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단행 법률의 제정 내지 「방송법」 개정을 통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3 절 방 송 서 비 스 종 료 승 인 기 준

아날로그 방송서비스 종료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준비가 필요한 계획이며 시청자의 입장에서도 사전 통보, 대체 서비스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승인 방식은 서비스 종료계획 접수, 일정기간 경과 후 서비스 종료 승인 요청, 서비스 종료 승인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표 3-2〉 아날로그방송 서비스 종료 승인 절차(2G 종료 사례 준용)

구분	특징
서비스 종료 계획 접수	사업자는 서비스 종료 계획을 작성, 규제기관에 접수
서비스 종료 승인 요청	종료 계획 접수 시점으로부터 최소 2개월 이상 경과 후 승인 요청
서비스 종료 승인	서비스 종료 신청서를 검토하여 적절성을 판단 승인 조건 부과 여부 판단

여기서 종료 계획 접수와 종료 승인 요청의 두 단계로 구분하는 이유는 서비스 종료가 규제기관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전 규제에 해당하므로 승인 과정에서 충분한 준비를 통해 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피하기 위해서다.

케이بل방송 사업자가 아날로그 서비스 종료 승인 요청 시 규제기관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 요인으로 해당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자 수와 특징, 해당 방송 권역의 특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즉 현재 아날로그방송 서비스 이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떤지,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의 특성은 어떤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해당 방송 권역 내의 대체 서비스 유무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독점 권역일 경우 아날로그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대체할만한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서비스(위성, IPTV 등)이 있는지, 경쟁 권역이라면 경쟁사가 아날로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또는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는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해당 사업자의 전환을 위한 준비 상태로 아날로그 종료시 필요한 장비, 시설, 인력 등이 준비되어 있는지, 서비스 종료 시 기존 가입자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가입자 보호 조치다. 서비스 종료에 대해 사전에 가입자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설명 하였는지, 다른 서비스로 전환을 위해 충분한 설명과 노력을 하였는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표 3-3〉 아날로그방송 서비스 종료 승인 시 검토 사항

구분	세부 항목	주요 내용
환경 요인	서비스 이용자 수와 특징	현재 아날로그방송 서비스 이용자의 비중과 어떤 이용자로 구성 되어 있는가?
	대체 서비스 유무	해당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대체할만한 다른 서비스가 있는가? - 독점 권역: 비슷한 가격대의 서비스 - 경쟁 권역: 아날로그 서비스/대체 서비스의 유무
사업자 준비	방송 인프라	아날로그 종료시 디지털 방송에 필요한 장비, 시설, 인력 등 준비 상태
	서비스 인프라	상담/문의 등에 대한 인프라 준비(상담원 교육, 콜센터 운영 등)
가입자 보호	사전 안내	서비스 종료를 위해 가입자에게 취지와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설 명 하였는가?
	가입자 전환 노력	다른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대체 서비스	기존 가입자를 위해 필요한 대체 서비스 등 준비 상태
기타	국내외 사례	해외 주요국의 유사 사례는 어떠한가? 국내 유사 사례가 있는가?
	기타	기술발전 추세 등 그 밖에 고려해야 할 사항

마지막으로 국내외 유사 사례, 기술발전 추세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검토 사항은 개별 항목별로 절대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개별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⁴³⁾

제 4 절 방송서비스 종료시 가입자 보호 방안

1. 가입자 보호의 필요성

아날로그방송 서비스 종료 시 가입자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아날로그방송 서비스 가입자는 추가 비용부담 거부, 고화질, 다채널에 대한 수요 미흡 등을 이유로 다른 상품(더 비싼 디지털 상품이나 위성방송, IPTV서비스)으로 전환할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권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케이블방송의 경우 저가의 아날로그방송서비스 가입자가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피해를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날로그 방송서비스를 중단한 사업자가 동일한 가격으로 디지털케이블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권역 내에 다른 케이블방송사가 있고(경쟁 권역) 해당 방송사가 아날로그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물론 위성방송이나 IPTV도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이지만 현재의 서비스 가격은 아날로그 서비스 가격에 비해 높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특히 수용자 조사에서는 아날로그 가입자의 경우 디지털 서비스나 위성방송, IPTV 등 다른 서비스로 전환할 의사가 높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⁴⁴⁾

43) 예를 들어 아날로그 종료를 신청한 사업자의 권역 내 아날로그 가입자 비중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90%, 또는 95%)을 제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해외 주요국의 종료 사례를 보면 네덜란드 Caiway, Rekam의 경우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가 95%에 이르는 지역도 있지만 스위스 GGA Maur 처럼 절반 정도인 지역도 있다.

44) 방송통신위원회의 "2012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유료방송 가입자의 경우 다른 상품으로의 전환의사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의 경우 디지털 케이블 가입 의사는 긍정적인응답(다소 있다, 매우 있다)이 17%인데 반해 부정적인 응답(전혀 없다, 별로 없다)이 54.2%에 달한다. 또한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의 경우 IPTV 가입 의사는 3.5%에 불과했다.

〈표 3-4〉 대체 서비스 유형별 가입자 선택 가능성

유형	대체 서비스	가입자 선택 가능성
독점 권역	디지털케이블	동일 가격대의 신규 서비스 제공될 경우 선택 가능
	위성방송, IPTV	비용 증가로 선택 불가능
경쟁 권역	아날로그방송 서비스	동일 가격대의 신규 서비스 제공될 경우 선택 가능 (전환에 따른 불편 발생)
	위성방송, IPTV	비용 증가로 선택 불가능

2. 가입자 보호 대상과 방안

아날로그 케이블방송 종료 시 보호해야 할 가입자는 저소득층과 일반가입자로 구분할 수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⁴⁵⁾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⁴⁶⁾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밖에 심신장애인, 장애인 복지단체 등과 같은 사회적 배려 계층과 국가유공자,

〈표 3-5〉 가입자 보호 대상 유형

구분	세부 유형	대상자
배려 계층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적 배려 계층	심신장애인,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사회 복지단체
	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단체
일반 가입자		아날로그방송 가입자 중 배려 계층을 제외한 일반 가입자

45)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법률 제11248호, 2012. 2. 1, 일부개정]로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6)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타법개정]에서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독립유공자 등과 같은 유공자도 가입자 보호 대상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날로그방송 가입자 중 배려 계층을 제외한 일반 가입자도 사실상 가입자 보호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현재 각 케이블방송사에서는 이용약관에서 저소득층 뿐 아니라 사회적 배려 계층과 유공자의 경우에도 요금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티브로드 광진성동방송의 경우 요금 감면 대상으로 심신장애인, 장애인 복지단체,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단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사회 복지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요금감면 대상자 1인 1회선에 한하여 기본이용료의 30% 감면을 적용하고 있다.⁴⁷⁾ 아날로그 보급형 서비스의 경우 61개 채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용료는 월 7천원 이하로 제시하고 있다.

제주방송의 경우 요금 감면 대상으로 심신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자녀 가정을 정하고 있으며 심신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아날로그 보급형 이용료는 2,000원 할인, 디지털방송 이용료는 30% 할인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아날로그 보급형 이용료 40% 할인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⁴⁸⁾

요금감면 대상과 감면 방법이 지역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사업자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아날로그방송 종료 시 가입자 보호 대상과 방안은 최소 기준을 설정(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47) 아날로그 상품은 의무형 패키지(21개 채널), 가족형 패키지(44개 채널), 알뜰형 패키지(54개 채널), 기본형 패키지(77개 채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금은 각각 월 4,000원 이하, 월 8,000원 이하, 월 12,000원 이하, 월 15,000원 이하이다. 디지털 상품은 디지털가족형(월 12,000원 이하)부터 아이디지털 HD 프리미엄(월 24,000원 이하)까지 5개의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48) 아날로그 보급형 서비스의 경우 61개 채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용료는 월 7천원 이하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아날로그 셋톱박스 사용료는 월 2천원이며 시설 설치비는 단독주택의 경우 4만원 이하, 공동주택은 6만원 이하이다.

〈표 3-6〉 티브로드 광진성동방송 사회복지요금감면 대상

구분	감면 대상	감면율
심신장애인	장애복지법 제19조에 근거하여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본인	30%
장애인 복지단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본인	
5·18민주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중 부상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순국선열 및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단체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및 4.19혁명부상자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다음 해당자 - 18세 미만 65세 이상 수급자 - 중증장애인 - 3개월 이상 치료 또는 요양자 - 근로가 곤란한자	
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사회 복지단체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 복지단체(고아원, 양로원 등)	
고객 모니터링제도	회사의 필요에 의해 운영되는 모니터링 제도에 참여하여 회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고객	

자료: 티브로드 광진성동방송 종합유선방송 이용약관. 기본이용료만 감면혜택 적용
(<https://www.tbroad.com/Service/ServiceProv.jsp>)

〈표 3-7〉 제주방송 사회복지요금감면 대상(아날로그 의무형은 제외)

구분	할인 대상	할인율
심신장애인	장애복지법 제19조에 근거하여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본인	- 아날로그 보급형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본인 (* 상이군경만 해당)	- 이용료 2,000원 할인 - 디지털방송 이용료 30% 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다음 해당자 - 만 18세미만 65세이상 수급자가 있는 가구	- 아날로그 보급형 이용료 40% 할인
다자녀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 결합상품(인터넷) 이용시	- 이용료 30% 할인

자료: 제주방송 케이블TV 이용약관(<http://www.kctvjeju.com/contents/member.htm?muid=164>).

아날로그방송 서비스 종료 시 가입자 유형별로 가입자 보호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클리어캠이나 요금감면, 무료 셋탑박스 대여 등은 해외 주요국의 사례에서도 적용되었으며 비용 부담도 크지 않지만 저가의 디지털서비스의 경우 유료방송 시장의 저가서비스 고착화라는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므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표 3-8〉 가입자 보호 대상 유형별 지원 방법

유형	보유 수상기 유형	지원 방법
취약 계층	아날로그TV	클리어캠 요금 감면
	디지털TV	요금 감면 저가 디지털서비스
일반 가입자	아날로그TV	무료 셋탑박스 대여 저가 디지털서비스
	디지털TV	저가 디지털서비스

제 4 장 방송서비스 종료 법제화 방안

제 1 절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법안의 필요성

1. 개요

방송시장은 크게 무료방송(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등)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유료방송의 제작·송출·송신·수신 등의 과정을 디지털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상파방송의 경우 2008년 3월 28일 제정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대한 특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여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진 바 있다.⁴⁹⁾

반면, 전체 방송시장의 89.1%⁵⁰⁾를 차지하고 있는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현황을 살펴보면, 위성방송, IPTV의 경우 100% 디지털방송을 송출하고 있으나, 종합유선방송사업(이하 “케이블TV”라 함)의 경우 시설의 디지털화가 대부분 완료⁵¹⁾되었음에도 가입자의 36.3%만이 디지털 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⁵²⁾

49) 제7조(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 ①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일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종료일까지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을 종료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0조의2(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일시)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일시는 2012년 12월 31일 오전 4시로 한다.

50) 전체 가구 중 TV를 시청하지 않는 가구는 3.0%이며, 지상파 직접 수신가구는 7.9%, 유료방송 시청가구는 89.1%인 것으로 나타남.

51) 방송통신위원회의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활성화 정책방향(2012)’ 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 말 현재 제작시설의 디지털화 현황은 SO는 86.3%, 위성방송은 100%, 채널사용사업자(PP)는 92.9%로 나타났으며 전송망 시설의 디지털화의 경우 SO가 95.7%, 위성방송과 IPTV가 모두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52)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제5면 이하.

〈표 4-1〉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현황(2013년 9월 기준)

(단위: 만 단자, OTS 중복 제외)

구분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계
아날로그 상품	896(60%)	-	-	896(36.0%)
디지털 상품	595(40%)	412(100%)	585(100%)	1,592(63.9%)
계	1,491(100%)	412(100%)	585(100%)	2,488(100%)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시청자의 권익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동안 디지털 전환 정책은 지상파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경우에 한정되었고,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으로 지상파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45.7만 가구(2012년 12월말 기준)가 디지털방송 시청의 혜택을 본 반면, 케이블TV 가입자 1,500만 중 아날로그 방송을 시청하는 957만은 여전히 디지털방송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⁵³⁾

따라서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도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마찬가지로 시청자의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모든 가구가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진정한 디지털 방송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성방송, IPTV는 100% 디지털방송을 송출하고 있어 실제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의 대상은 주로 케이블TV에 국한될 것으로 보이고, 위성방송의 경우 표준화질(SD) 디지털방송을 고화질(HD)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남아 있다.⁵⁴⁾

다음으로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은 디지털방송 및 아날로그방송의 중복 송출로 인한 플랫폼사업자의 전송망의 비효율적 활용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송출비용 이중 부담의 축

53)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제6면 이하.

54) 다만, 지상파의 아날로그 방송 종료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디지털 난시청 등을 해결하여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수신환경을 구축한 이후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일부 존재함.

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 플랫폼 사업자는 동일한 콘텐츠를 디지털방송과 아날로그 방송으로 중복 송출하고 있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아날로그방송 및 디지털방송 송출에 대한 비용을 각각 부담하고 있다. 아날로그 방송 종료로 디지털방송만을 송출할 수 있게 될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전송망의 효율적 활용과 기존 아날로그 방송용으로 활용되던 주파수를 회수하여 여유 주파수를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도 아날로그 송출 중단으로 인한 송출비용을 절감과 콘텐츠에 대한 투자 여력이 확대될 뿐 아니라 기존 아날로그 대역이 디지털 대역으로 전환될 경우 시장진입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⁵⁵⁾

3. 단행법안 제정의 필요성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은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달리 유료방송의 특성상 정부의 개입이 아닌 유료방송사업자의 자율적인 추진이 설득력이 있으며, 자발적인 디지털 전환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같은 아날로그 유료방송 가입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

다만, 아날로그 TV로 아날로그 상품을 계속 이용하려는 가입자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반드시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서 「방송법」을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단행법을 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방송법」 개정은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다른 방송사업자들이 존재함에 따라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에 관한 법적 근거만을 위하여 「방송법」을 개정하는 것은 필요성을 결여하고 있고, 「방송법」 개정의 경우 시청률 합산규제 등 다른 쟁점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므로 부득이 단행법의 제정을 통하여 신속한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5)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제6면 이하.

제 2 절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법안의 주요 내용

1. 아날로그 유료방송 등의 종료 승인

가. 법령안 요지

아날로그 유료방송의 종료는 사실상 아날로그 유료방송의 사업 폐지에 준하는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사업의 휴지·폐지에 준하는 가입자에 대한 보호조치 내지 주무관청의 승인 또는 신고 절차가 필요하다.

「방송법」은 사업의 휴지·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2조와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와 제26조(별정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서 사업의 휴지·폐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업의 휴지·폐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의 휴지·폐지에 대한 주무관청의 개입 정도는 다르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경우에는 사업의 휴지·폐지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미래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자의 경우에는 미래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미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별정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미래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휴지·폐지시 가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상당한 기일 전에 그 내용을 통지하고 주무관청에 승인 또는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이용자(전기통신사업법의 경우) 또는 가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경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시행령에서는 유료방송사업자가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서비스를 종료를 하는 경우 아날로그 유료방송등 종료의 내용, 가입자 보호조치 계획서 등 미래부장관에게 제출할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나. 법령안

법 률 안

제0조(아날로그 유료방송등의 종료) ① 유료방송사업자가 아날로그 유료방송이나 표준화질 디지털 유료방송(이하 “아날로그 유료방송 등”이라 한다)을 종료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료 예정일 180일 전까지 아날로그 유료방송등의 가입자에게 이를 알리고, 아날로그 유료방송등의 종료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아날로그 유료방송등의 종료에 대한 승인을 하는 경우 아날로그 유료방송등의 종료에 따라 별도의 가입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 전환의 대행 및 비용 부담, 가입 해지 편의 제공 등 가입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 행 령 안

제0조(아날로그 유료방송등의 종료 승인) ① 법 제4조제1항에서 아날로그 유료방송이나 표준화질 디지털 유료방송(이하 “아날로그 유료방송 등”이라 한다)을 종료하려는 유료방송사업자는 종료 예정일 18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아날로그 유료방송등 종료의 내용 및 사업구역의 도면
2. 아날로그 유료방송등 종료하려는 사업에 관한 주요 유료방송설비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3. 허가서(사업의 전부를 폐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사유서
5. 아날로그 유료방송등 종료 사실의 통지에 관한 서류
6. 아날로그 유료방송등 종료에 따른 가입자 보호조치 계획을 기재한 서류

2.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필요한 조치

가. 법령안 요지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및 아날로그 유료방송의 종료에 따른 유료방송 송수신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가입자에 대한 적절한 홍보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달리 유료방송의 특성상 정부가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유료방송사업자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정부가 가입자의 아날로그 유료방송의 종료에 대한 인지율 및 디지털 유료방송의 전환 비율 등에 대한 실태조사,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및 아날로그 종료에 관한 상담이나 관련 정보의 제공과 같이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방안과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및 아날로그 유료방송의 종료에 대한 가입자 홍보를 위한 공익광고 제작 및 배급 등 유료방송 사업자가 해야 할 사항을 구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안보다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자 자율에 맡기고 삭제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미래부가 홍보를 위한 광고 제작 및 배급을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유료방송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어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및 아날로그 종료에 따른 최소한 조치에 대한 주무관청의 관여는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 법령안

법 률 안

제0조(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필요한 조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및 아날로그 유료방송등의 종료에 따르는 유료방송 송수신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홍보나 시청자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 행 령 안

제0조(디지털 전환을 위한 홍보 및 시청자 지원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아날로그 유료방송 종료에 대한 인지율 및 디지털 유료방송의 가입자 비율 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통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및 아날로그 유료방송 종료에 관한 가입자 홍보를 위하여 공익광고 제작 및 배급을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아날로그 유료방송의 종료 및 원활한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비상업적 공익광고, 자막광고, 자막방송 및 특별 프로그램의 제작 등 필요한 사항을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아날로그 유료방송 종료 및 디지털 전환에 관한 상담이나 관련 정보의 제공 등 가입자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아날로그 유료방송의 종료 및 디지털 전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홍보 및 가입자 지원 등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저소득층에 대한 디지털 전환의 지원 근거 마련

가. 법령안 요지

자발적으로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곤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의 디지털 전환 지원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방안으로는 요금감면 및 디지털 수신장치를 내장한 저가의 디지털 텔레비전 보급 등이 있을 수 있다.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의 차상위계

층도 포함시킬 것인지가 문제이다.

지상파디지털 전환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지원대상에서 차상위계층을 포함하지 않고 있고, 정부개입의 근거 필요성이 지상파보다 낮은 유료방송에서 그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일반조항인 “그 밖에 가구의 소득·지출수준, 재산현황, 생활실태 및 생계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지원이 필요하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상파 디지털 전환에 관한 특별법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규정은 없지만, 이미 저소득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대상에 차상위계층이 포함되어 있고, 아날로그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지원대상에 차상위계층이 포함되더라도 다른 계층의 반발이나 반대 여론이 클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향후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유료방송의 요금감면이나 지상파 방송수신료 면제와 같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지상파 디지털 전환에 관한 특별법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규정이 없기 때문에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지원대상에서 차상위계층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논거는 성립될 수 없다. 오히려 지상파 디지털 전환에 관한 특별법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근거를 두지 않는 것은 입법의 잘못이며, 그런 이유로 지상파 디지털 전환에 관한 특별법에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사업에서 차상위계층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의 지원대상에서 차상위계층을 포함시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다.

지원방법에 대하여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방안에 관하여 현재 아날로그 유료방송 시장에 있어서도 사업자마다 요금감면 비율이 다르고, 지원대상의 범위도 달라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경우 영세사업자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우려가 있고, 대형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만을 지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약관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지원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약관의 신고 또는 승인과정에서 미래부의 정책방향이나 의견을 반

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법률안에는 자발적 디지털 전환이 어려운 저소득층 아날로그 유료방송 가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상파디지털 전환특별법과 달리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여기에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달리 유료방송의 경우 아날로그 가입자가 추가적인 이용요금의 부담이 예상되는 바,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저가디지털 텔레비전 보급 외에 디지털 방송 수신 내장형 디지털 텔레비전 수상기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을 구성하여 운용할 수 있게 하고, 저소득층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저소득층의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보조금을 받은 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시행령에서는 개인정보 활용의 경우에도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나. 법령안

법 률 안

제0조(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 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이하 이 조에서 “저소득층”이라 한다)이 디지털 유료방송을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유료방송사업자가 디지털 텔레비전 수상기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방송의 공익성·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1. 가입대상

2. 채널의 구성 및 운용방식

③ 유료방송사업자는 디지털 유료방송 가입자 중 저소득층에 대하여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④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저소득층의 시청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저소득층의 시청권 보호를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을 지원할 당시 수집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수행하려는 사업의 목적·성격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된 원인이 된 사업의 목적·성격과 유사한 경우

2. 유사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한정

⑥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0조(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의 가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개별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아날로그 텔레비전 수상기만을 보유하거나 디지털 유료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 텔레비전 수상기를 보유하고 아날로그 유료방송을 이용하는 가구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의 가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가구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 및 제16호에 따른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가구
 4.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의 가구
 5. 「5·18민주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중 동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가구
 6.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청각 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7. 그 밖에 가구의 소득·지출수준, 재산현황, 생활실태 및 생계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지원이 필요하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 ② 유료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지원방법 등을 약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0조(디지털 유료방송의 채널구성 및 운용)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디지털 유료방송의 가입대상, 채널 구성 및 운용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1호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의 가구 및 가구의 소득·지출수준, 재산현황, 생활실태 및 생계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지원이 필요하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2. 채널구성 및 운용방식: 의무전송 채널을 포함한 기준에 가입한 아날로그 유료방송 서비스(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채널 수 보장

제0조(개인정보 활용 절차)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활용 기관
2.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수행하려는 사업 및 그 목적
3. 활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활용 및 보유기간

4. 아날로그 유료방송 가입자 등의 시청권 보호

가. 법령안 요지

최소 유지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입자 보호조치로서 실효성이 큰 제도이다.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디지털 텔레비전을 구입하거나 디지털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저소득층의 경우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서비스를 유지하는 것이 저소득층의 시청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서비스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시청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서비스의 유지는 미국의 경우 3년의 유지기간을 보장한 사례가 있다. 다만, 이러한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서비스의 최소 유지기간 보장은 결과적으로 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는 디지털 케이블 방송서비스와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서비스를 병행해야 하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는 저소득층의 시청권과 유료방송사업자의 영업권이 충돌하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일방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종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는 양 당사자의 기본권이 침해하게 대립할수록 국가의 개입에 의한 해결의 당위성 내지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서비스의 최소 유지기간은 결국 저소득층의 시청권과 유료방송사업자의 영업권의 충돌이며, 이러한 충돌을 규범조화적으로 헌법해석을 통해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결국에는 입법적인 해결을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시청권을 보장하되 유료방송사업자의 영업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영업권을 보장하는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서비스의 종료에 대하여 규제기관의 승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가입자 보호조치를 수반하는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서비스의 종료 승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저소득층의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 유지기간을 설정하되, 유료방송사업자의 영업권 보장을 위한 종료 승인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날로그 유료방송(표준화질 디지털 유료방송 포함) 종료시 종료예정일 180일 전까지 가입자에게 알리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아날로그 유료방송 가입자의 시청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법안에서는 유료방송 가입자의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 까지 아날로그 유료방송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3년과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 아날로그 유료방송을 유지하는 방안과 인도와 같이 어느 시점까지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시점을

규정하는 방안의 절충적인 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2012년 말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 아날로그 유료방송 가입자가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아날로그 변환이 필요한 상황이며, 유료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에 대하여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아날로그로 변환하여 재송신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행정지도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무화하였다.

나. 법령안

법 률 안

- 제0조(아날로그 유료방송 가입자 등의 시청권 보호)** ① 유료방송사업자는 고화질 디지털 유료방송을 이용하지 않는 가입자가 계속하여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2017년 12월 31일까지 아날로그 유료방송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날로그 유료방송등을 종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유료방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아날로그 유료방송등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료방송사업자가 재송신하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에 대하여도 가입자가 동일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유료방송사업자가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을 재송신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7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

제5장 결 론

본 연구는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디지털방송의 혜택이 전 국민으로 확산되고 아날로그 방송 종료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지상파 텔레비전의 아날로그방송 종료 완료로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 아날로그 가입자를 디지털 가입자로 전환하고 차세대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도입 기반 조성을 포함하는 개념인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고화질, 다 채널 방송 및 양방향 서비스 제공으로 시청자 복지를 향상시키고, 유료방송 네트워크 효율화를 통한 신규 서비스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경영환경 개선 및 시장진입 기회를 확대하는 등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존 가입자의 피해가 예상되며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는 가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보호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방송통신서비스 종료 사례의 경우 사례 분석(Case Study)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내 사례로는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2G 서비스(PCS 사업) 종료, 위성DMB 서비스 종료, 인터넷 사업자(KTH, 야후, 프리첼 서비스)의 서비스 중단 사례 분석을 통해 기존 사례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또한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인도 등 해외 주요국의 케이블방송 디지털 전환 현황 분석을 통해 아날로그 가입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등을 분석하였다.

방송서비스 종료 승인과 가입자 보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우선 방송서비스 종료와 관련된 쟁점과 이슈를 검토하였다.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방송법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 법령을 통해 아날로그 유료방송서비스의 종료에 대한 규제 및 시청권 보호를 위한 가입자 보호 방안을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결과 변경허가 제도나 약관승인 제도를 통해서 종료승인을 대체하기 어렵고, 행정지도의 경우 가능한 하지만 충분히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워 디지털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단행 법률의 제정 내지 방송법 개정을 통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법안에는 아날로그 유료방송 등의 종료 승인,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필요한 조치, 저소득층에

대한 디지털 전환의 지원 근거 마련, 아날로그 유료방송 가입자 등의 시청권 보호 관련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유료방송사업자의 아날로그방송 서비스 종료 승인 과정에서는 서비스 이용자수, 대체 서비스 유무 등 환경적인 요인과, 사업자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준비상태, 가입자 보호 조치 노력, 기술발전 추세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료방송의 아날로그방송 서비스 종료 시 취약계층과 일반가입자 등 가입자 유형에 맞추어 클리어콕이나 요금감면, 무료 셋탑박스 대여 등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송서비스 종료 승인 기준과 방송 서비스 종료 시 가입자 보호 조치 방안, 유료방송 디지털전환법(안)과 시행령(안)은 유료방송의 아날로그 방송서비스 종료와 관련된 정책 수립에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 결과가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방송 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는 물론 가입자 보호를 통한 수용자 복지 향상이라는 균형 잡힌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권영성(1999), 『신관 헌법학 원론』, 법문사, 1999. 9.
- 디지에코(2011), “2G 서비스 종료 관련 쟁점 이슈 검토 및 시사점”, Issue & Trend, 2011.
11. 1.
- _____ (2012), “위성 DMB 서비스 종료에 따른 시사점”, 동향보고서, 2012. 7.
- 류지태·박종수(2010), 『행정법 신론』, 박영사, 2010. 3.
- 대법원(2002), 선고 2002두820 판결, 2002. 8. 23.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2013),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김장실의원 대표발의. 2013. 6.
- 박성철(2012), 『융합시대에 대응한 방송통신 시장의 경쟁 환경 조성 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12. 12.
- 방송통신위원회(2012),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활성화 정책방향”, 2012. 10.
- 임 준·박민성·정두남(2012), 『케이블방송 디지털전환 계획 및 시청자 보호방안 연구』, 방통융합미래전략체계연구 지정2012-1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2. 12.
- 임 준 외(2010), 『방송통신 진화에 따른 규제체계 고도화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10. 12.
- 정용찬·주성희·김욱준(2012), 『2012년 국제방송시장과 수용자 조사 [제2권] 주요국의 방송 정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2013), “아날로그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케이블TV 디지털 전환 활성화 추진 전략.”

[국내 기사]

- 《경제투데이》(2011. 6. 24), “방통위, KT 2세대 이동통신서비스 폐지 미승인.”
- 《디지털타임즈》(2011. 11. 23), “KT ‘2G 서비스’ 12월 8일 0시 종료.”
- 《서울신문》(2013. 2. 12), “나우누리 종료금지 신청 회원이 운영권인수 나서.”
- 《IT동아》(2012. 7. 5), “SK텔링크, ‘위성DMB’ 사업 종료.”
- 《이투데이》(2012. 12. 31), “야후코리아, 31일 국내서비스 종료... 15년 역사 막 내려.”
- 《한국경제TV》(2012. 6. 20), “KTH ‘파란’ 종료.. 모바일 주력.”

[해외 문헌]

- ANGA(2009). Positionspapier zur Digitalisierung.
- _____ (2013). ANGA Tätigkeitsbericht 2013.
- Broadband TV News(2013). “Analogue shut-off could hurt cable”, 2013. 5. 21.
- Business Standard, October(2012). “Phase-wise switch off on analogue cable begins in 4 metros”, 2012. 11.
- Die Medienanstalten(2001). *Positionspapier der Landesmedienanstalten* “Eckwerte für den Übergang analog/digital im Kabel”.
- _____ (2012). *Digitale Entwicklung in Berlin und Brandenburg*.
- _____ (2013). *Digitalisierungsbericht 2013*.
- Digital Spy, “Virgin begins analogue cable switch off”, 2008. 5. 12.
- Informa Telecoms & Media(2012a). *Americas TV(16th edition)*.
- _____ (2012b). *Western European TV(16th edition)*.
- _____ (2013). *Asia Pacific TV(17th edition)*.
- Rapid TV News, “First analogue switch-off for Swiss cable”, 2013. 5. 28.
- Screen Digest, “First Dutch cable operators end analogue”, 2010. 10. 8.
- The Times of India, “Analog signals go off, cable TV goes digital”, 2013. 4. 18.
- TVNewsCheck, “FCC To Kill Viewability Rule On Dec. 12”, 2012. 6. 12.

[관련 법규]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웹사이트]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http://www.fcc.gov/>

영국케이블포럼: <http://www.cableforum.co.uk/>, Jan. 11, 2008.

제주방송 케이블TV 이용약관: <http://www.kctvjeju.com/contents/member.htm?muid=164>

콕스: <http://ww2.cox.com/residential/northernvirginia/home.cox>

컴캐스트: <http://www.comcast.com/>

케이블TV 디지털전환에 대한FCC 가이드:

<http://www.fcc.gov/guides/dtv-transition-did-not-require-cable-systems-switch-digital>

타임워너케이블: <http://www.timewarnercable.com/en/residential-home.html>

티브로드 광진성동방송 종합유선방송 이용약관:

<https://www.tbroad.com/Service/ServiceProv.jsp>

미디어컴: <http://mediacomcable.com/site/index.html>

위키피디아: http://en.wikipedia.org/wiki/Digital_television_transition_in_the_United_States

[부 록]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법률안 제정안	시행령 제정안	비 고
<p>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법」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디지털방송을 활성화하여 시청자의 권익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유료방송”이란 가입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 개의 채널단위·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p> <p>2. “유료방송사업자”란 「방송법」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하거나 받아 유료 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p>	<p>제1조(목적) 이 영은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을 제정하는 목적을 규정함 - IPTV의 경우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므로 아날로그 종료 또는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도 없는 IPTV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p>○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법 제2조제20호에 동일한 유료방송 정의가 있으며, 여기에서는 계약의 주체를 시청자를 사용하고 있음 - 시청자는 주로 지상파방송을 수신하는 자를 표현하는 정치사회적 개념으로 계약을 전제로 하는 유료방송 수신자로 적합하지 않음 - 일반적으로 계약을 전제로 하는 경제적 개념으로 가입자 또는 이용자 개념이 적합

법률안 제정안	시행령 제정안	비 고
<p>3. “디지털화”란 방송의 제작·송출·송신·수신·보존 및 이용에서 그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p> <p>4.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이라 함은 유료 방송의 제작·송출·송신·수신 등의 과정을 디지털화하여 아날로그 유료방송을 종료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p> <p>5. “고화질”이란 영상신호 형식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비월주사(飛越走査) 방식으로 주사선 수가 1,080개 이상이고, 주사선(走査線)에 포함된 화소 수가 1,920 이상인 것</p> <p>나. 순차주사(順次走査) 방식으로 주사선 수가 720개 이상이고, 주사선에 포함된 화소 수가 1,280 이상인 것</p> <p>6. “표준화질”이란 영상신호 형식이 고화질이 아닌 것을 말한다.</p> <p>7. “고화질 디지털 유료방송”이란 고화질로 디지털화된 유료방송을 말한다.</p> <p>8. “표준화질 디지털 유료방송”이란 표준화질로 디지털화된 유료방송을 말한다.</p> <p>9. “아날로그 유료방송”이란 고화질 또는 표준화질로 디지털화되지 아니한 유료방송을 말한다.</p>		<p>○ 검토</p> <p>- 디지털 전환이 아날로그 유료방송의 종료로 전제로 하는 경우 제7조제1항은 디지털방송과 아날로그 방송의 중복 송출을 전제로 하는 것과 모순</p> <p>- 디지털 전환과 아날로그 유료방송의 종료로 별개로 보고,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의를 축소하는 것이 타당함</p>

법률안 제정안	시행령 제정안	비 고
<p>10.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이란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텔레비전방송을 말한다.</p> <p>1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p> <p>제3조(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촉진등을 위한 의무) 미래창조과학부장은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디지털 유료방송을 송출하기 위한 방송설비의 구축·개선 2. 아날로그 유료방송등의 가입자에 대한 보호 방안 시행 3. 그 밖에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제4조(아날로그 유료방송등의 종료) ① 유료방송사업자가 아날로그 유료방송이나 표준화될 디지털 유료방송(이하 “아날로그 유료방송등”이라 한다)을 종료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료 예정일</p>	<p>제2조(아날로그 유료방송등의 종료 승인) ① 법 제4조제1항에서 아날로그 유료방송이나 표준화될 디지털 유료방송(이하 “아날로그 유료방송등”이라 한다)을 종료하려는 유료방송사업자는 종료 예정일 180일 전까지</p>	<p>○ 검토</p> <p>- 정의 규정은 해당 법률에서 그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 필요한데, 법률안에서 공공기관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아 공공기관의 정의는 불필요함</p> <p>○ 검토</p> <p>-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일반조항은 수시로 변동하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행정작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p>

비 고	시행령 제정안	법률안 제정안
<p>○ 검토</p> <p>- 가입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가입자 보호 조치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경우로 제한되고, 종로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어 유연한 정책을 반영하기 곤란함</p> <p>- 또한 가입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 명령은 재량행위의 성질을 가지는데, 재량행위의 성질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입자 보호 조치와 맞지 않음</p>	<p>시행령 제정안</p> <p>다음 각 호의 서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날로그 유료방송등 종료의 내용 및 사업구역의 도면 2. 아날로그 유료방송등 종료하려는 사업에 관한 주요 유료방송설비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3. 허가서(사업의 진부를 폐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사유서 5. 아날로그 유료방송등 종료 사실의 통지에 관한 서류 6. 아날로그 유료방송등 종료에 따른 가입자 보호조치 계획을 기재한 서류 	<p>법률안 제정안</p> <p>180일 전까지 아날로그 유료방송등의 가입자에게 이를 알리고, 아날로그 유료방송등의 종료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후단 삭제></p>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아날로그 유료방송등의 종료에 대한 승인을 하는 경우 아날로그 유료방송등의 종료에 따라 별도의 가입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유료방송사업자에게 가입 진환의 대행 및 비용 부담, 가입 해지 편의 제공 등 가입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법률안 제정안	시행령 제정안	비 고
<p>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아날로그 유료방송등의 종료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해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 (유사 입법례)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제2항에서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의 휴지·폐지로 인하여 별도의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가입 전환의 대행 및 비용 부담, 가입 해지 등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하여 유연한 정책이 가능하도록 재량행위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 승인의 경우 허가 및 승인 여부는 관할 행정기관의 재량행위이므로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음 - 방송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상 허가, 승인의 경우 그 거부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 - 공공의 이익의 불명확성을 근거로 법률에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종료 승인을 거부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공공의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시키는 견해도 있음 <p>※ 공공의 이익을 해결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경우 시행령 조문</p>

법률안 제정안	시행령 제정안	비 고
<p>제5조(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필요 한 조치) 미래창조과학부장은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및 아날로그 유료방송등의 종료에 따르는 유료방송 송수신 환경 변화</p>	<p>제3조(디지털 전환을 위한 홍보 및 시청자 지원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은 아날로그 유료 방송 종료에 대한 인지도 및 디지털 유료방송의 가입자 비율 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p>	<p>제0조(아날로그 유료방송 종료 승인 거부) 미래창조과학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날로그 유료방송의 종료를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의 가구 등 지원이 필요한 가입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경우 2. 해당 유료방송사업자가 해당 사업권역에서 독립적 지위에 있어 대체 서비스로 전환이 불가능하여 가입자의 시청권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아날로그 유료방송의 경우와 유사한 상품의 축소 및 가격 증가로 가입자의 시청권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전환 비용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가입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가입자의 시청권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p>○ 검토 - 정부의 지원 방안보다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자 자율에 맡기고 삭제하자는</p>

법률안 제정안	시행령 제정안	비 고
<p>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홍보나 시청자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조사를 통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및 아날로그 유료방송 종료에 관한 가입자 홍보를 위하여 공익광고 제작 및 배급을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아날로그 유료방송의 종료 및 원활한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비상업적 공익광고, 자막광고, 자막방송 및 특별 프로그램의 제작 등 필요한 사항을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아날로그 유료방송 종료 및 디지털 전환에 관한 상담이나 관련 정보의 제공 등 가입자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아날로그 유료방송의 종료 및 디지털 전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홍보 및 가입자 지원 등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의견도 있으나, - 미래부가 홍보를 위한 광고 제작 및 배급을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유료방송사업자의 자율에 맡기도록 함</p>
<p>제6조(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이하 이 조에서 “저소득층”이라 한다)이 디지털 유료방송을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제4조(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의 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개별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아날로그 텔레비전 수상기만을 보유하거나 디지털 유료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 텔레비전</p>	<p>○ 검토 ① 차상위계층 포함 여부 - 지상파디지털 전환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지원대상에서 차상위계층을 포함하지 않고 있고, 정부개입의 근거 필요성이 지상파보다 낮은 유료방송에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부적절함</p>

법률안 제정안	시행령 제정안	비고
	<p>수상기를 보유하고 아날로그 유료방송을 이용하는 가구로 한다.</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의 가구</p> <p>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가구</p> <p>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 및 제16호에 따른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가구</p> <p>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의 가구</p> <p>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중 동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의 가구</p> <p>6.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청각 장애인 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p> <p>7. 그 밖에 가구의 소득·지출수준, 재산현황, 생활실태 및 생계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지원이 필요하다고 미래 창조과학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p>	<p>비고</p> <p>- 다만, 향후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을 경우 “그 밖에 가구의 소득·지출수준, 재산현황, 생활실태 및 생계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지원이 필요하다고 미래 창조과학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p> <p>- 따라서 지원대상에 차상위계층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적절함</p> <p>- 그러나, 지상과 디지털 전환에 관한 특별법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규정은 없지만, 저소득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대상에 차상위계층이 포함되어 있어 아날로그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지원대상에 차상위계층이 포함되더라도 다른 계층의 반발이나 반대 여론이 클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p> <p>- 향후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는 유료방송의 요금감면이나 지상과 방송수신료 면제의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할 것임</p> <p>② 지원방법의 구체적 기준에 관하여</p> <p>- 지원방법에 대하여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방안은 현재 아날로그 유료방송 시장</p>

법률안 제경안	시행령 제경안	비 고
	<p>① 유료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지원방법 등을 약관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상기를 보유하고 아날로그 유료방송을 이용하는 가구로 한다.</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의 가구</p> <p>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가구</p> <p>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 및 제16호에 따른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가구</p> <p>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의 가구</p> <p>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중 동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의 가구</p> <p>6.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청각 장애인 이 생활하는 가구의 수상기</p>	<p>에 있어서도 사업자마다 요금감면 비율이 다르고, 지원대상의 범위도 달라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경우 영세사업자는 - 다만, 향후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을 경우 “그 밖에 가구의 소득·지출수준, 재산현황, 생활실태 및 생계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지원이 필요하다고 미래창조과학부정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p> <p>- 따라서 지원대상에 차상위계층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적절함</p> <p>- 그러나, 지상파 디지털 전환에 관한 특별법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규정은 없지만, 저소득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대상에 차상위계층이 포함되어 있어 아날로그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지원대상에 차상위계층이 포함되더라도 다른 계층의 반발이나 반대 여론이 클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p> <p>- 향후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는 유료방송의 요금감면이나 지상파 방송수신료 면제의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할 것임</p>

법률안 제정안	시행령 제정안	비 고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유료방송사업자가 디지털 텔레비전 수상기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을 운용하는 경우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방송의 공익성·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p> <p>1. 가입대상</p> <p>2. 채널의 구성 및 운용방식</p>	<p>7. 그 밖에 가구의 소득·지출수준, 재산현황, 생활실태 및 생계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지원이 필요하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p> <p>② 유료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지원방법 등을 약관에 반영하여야 한다.</p> <p>제5조(디지털 유료방송의 채널구성 및 운용)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디지털 유료방송의 가입대상, 채널 구성 및 운용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가입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11호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의 가구 및 가구의 소득·지출수준, 재산현황, 생활실태 및 생계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지원이 필요하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p>	<p>② 지원방법의 구체적 기준에 관하여 - 지원방법에 대하여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방안은 현재 아날로그 유료방송 시장에 있어서도 사업자마다 요금감면 비율이 다르고, 지원대상의 범위도 달라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경우 영세사업자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우려가 있고, 대형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만을 지원할 우려가 있음</p> <p>- 사업자가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약관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지원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약관의 신고 또는 승인과정에서 미래부의 정책방향이 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p> <p>○ 검토</p> <p>-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TV수상기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은 방송사업자들간 저소득층에 한정해 도입한다는 전제로 조문화되었으나,</p> <p>- 해당 문구가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 채널의 구성·운용방식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법령 명시</p>

비 고	시행령 제정안	법률안 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의 시청권 보호를 위한 지원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의 시청권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지원받은 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p>2. 체널구성 및 운용방식: 의무전송 채널을 포함한 기존에 가입한 아날로그 유료방송 서비스(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채널 수 보장</p>	<p>③ 유료방송사업자는 디지털 유료방송 가입자 중 저소득층에 대하여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p> <p>④ 미래창조과학부장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저소득층의 시청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p> <p>⑤ 미래창조과학부장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저소득층의 시청권 보호를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을 지원할 당시 수집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수행하려는 사업의 목적·성격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된 원인이 된 사업의 목적·성격과 유사한 경우 2. 유사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한정

법률안 제정안	시행령 제정안	비고
<p>⑥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조(개인정보 활용 절차)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의 활용 기관 2.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수행하려는 사업 및 그 목적 3. 활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활용 및 보유기간 	<p>○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의 심의·의결을 필요로 함(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5호)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개인정보 활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할 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 - 다만,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활용 기관, 목적, 항목, 활용 및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함
<p>제7조(아날로그 유료방송 가입자 등의 시청권 보호) ① 유료방송사업자는 고화질 디지털 유료방송을 이용하지 않는 가입자가 계속하여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2017년 12월 31일까지 아날로그 유료방송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날로그 유료방송등을 종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12월 31일 이전까지의 범위에서 유료방송 유지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이 방안은 법안의 통과 시기에 따라 유기간이 변동되는 불확실성의 문제가 발생 - 법률안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료방송을 유지하는 것이 가입자의 시청권을 보장하는 적절한 방안임 - 따라서 아날로그 유료방송 가입자 등의 시청권 보장을 위해 원칙적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아날로그 유료방송을 유지하도록 하되, 유료방송 종료 승인을 받은

법률안 제정안	시행령 제정안	비 고
<p>② 유료방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아날로그 유료방송등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료방송사업자가 재송신하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에 대하여도 가입자가 동일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유료방송사업자가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을 재송신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7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p>		<p>경우에는 아날로그 유료방송 유지의무를 면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날로그 유료방송을 유지하는 경우 지상파방송도 동일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날로그 유료방송에서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는 경우 방송법 규정을 준용도 록 함
<p>제8조(시정명령)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유료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조를 위반하여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래과학부장관의 승인없이 아날로그 유료방송등을 중료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제6조제2항의 가입대상, 채널의 구성 및 운용방식을 위반한 경우 5.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아날로그 유료방송등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을 재송신하지 아니한 경우 		

비 고	시행령 제정안	법률안 제정안
	<p>제7조(과태료의 부과) 범 제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p>	<p>법률안 제정안</p> <p>제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조를 위반하여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래과학부 장관의 승인없이 아날로그 유료방송등을 중료한 자 제4조제2항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6조제2항의 가입대상, 채널의 구성 및 운용방식을 위반한 자,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아날로그 유료방송등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상파텔레비전 방송을 재송신하지 아니한 자.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p>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p> <p>제3조(아날로그 방송등 종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유료방송사업자가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아날로그 유료방송등을 종료한 경우 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날로그 유료방송등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p>

○ 검토
- 아날로그 방송등 종료에 관한 경과조치 추가

[별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7조 관련)

I.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별 과태료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로 한다.
- 나. 부과권자는 위반 정도·횟수·기간·동기·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II.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1회	2회	3회 이상
1. 제3조를 위반하여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제8조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 제1항	2,500	3,500	5,000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래과학부장관의 승인없이 아날로그 유료방송등을 종료한 자가 제8조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 제1항	5,000	7,000	10,000
3. 제4조제2항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가 제8조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 제1항	3,000	4,000	5,000
4. 제6조제2항의 가입대상, 채널의 구성 및 운용방식을 위반한 자가 제8조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 제1항	3,000	4,000	5,000
5.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아날로그 유료방송등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가 제8조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 제1항	5,000	7,000	10,000
6.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을 재송신하지 아니한 자가 제8조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 제1항	3,000	5,000	7,000

● 저 자 소 개 ●

정 용 찬

-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응용통계학 석사
- 고려대학교 응용통계학 박사
- 방송위원회 연구센터 연구위원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 경 오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제33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문위원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 윤 화

- 한국외국어대학교 이태리어과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 석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방통융합미래전략체계연구 지정2013-62
유료방송의 아날로그 방송서비스 종료지원방안 마련
(A Study on Digital Switchover Policy of Pay TV)

2013년 11월 일 인쇄

2013년 11월 일 발행

발행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발행처 미래창조과학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Homepage: www.msip.go.kr

인쇄 인성문화
